

『國朝寶鑑』의 編纂에 관한 研究*

Study on Compilation of Gukjobogam

엄태용 (Eom, Tae Yong)**

신승운 (Shin, Seung-Woon)***

◁ 목 차 ▷

1. 序 論	3.1 체제 분석
2. 『國朝寶鑑』의 문헌 계통	3.2 내용 분석
2.1 中國 記言體 史書	4.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의 刊行 분석 및
2.2 中國 記言體 史書와 『國朝寶鑑』의 失傳 내용의 복원	比較 考察
3. 『國朝寶鑑』의 체제 및 내용 분석	5. 結 論
	<참고문헌>

< 초 록 >

본 연구는 『國朝寶鑑』의 문헌 계통,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고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의 실제 간행 여부를 밝히고 失傳된 내용 일부를 복원한 것이다.

첫째, 『國朝寶鑑』의 문헌적 연원이 되는 中國 記言體 史書의 종류와 특성을 살피고 『國朝寶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尙書』를 시원으로 하는 記言體 史書는 唐 吳兢의 『貞觀政要』의 편찬에 이르러 史書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고, 이후 『貞觀政要』를 체제적 典範으로 삼아 宋·明代에 『寶訓』이 편찬되었다. 『國朝寶鑑』은 이러한 記言體 史書의 전통을 수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체제와 내용적 특징에 있어 각 『寶鑑』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체제는 존경을 표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改行과 空格을 적용하였으며 특히 正祖代 편찬본은 이전 『寶鑑』에 비하여 검색과 열람의 편의성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내용에 있어서 대부분의 『寶鑑』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 및 군왕의 수신과 관련된 기사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외 각 『寶鑑』은 편찬된 시대에 따라 내용상 강조 부분이 다르다. 한편 각 『寶鑑』은 대개 『實錄』에서 해당 내용을 취하였지만 正祖代 편찬의 『英宗朝寶鑑』은 『實錄』에서 전거를 가져오지 않은 경우가 비교적 많다.

셋째,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의 실제 간행 여부를 밝히고 『顏樂堂集』과 『實錄』에 수록된 逸文을 모아 失傳된 내용 일부를 복원하였다. 그 결과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의 간행본이 壬辰倭亂 이전에 존재했음을 밝혔으며 총 17건의 『續國朝寶鑑』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11건은 『實錄』에서 대응 되는 전거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要語: 國朝寶鑑, 寶鑑, 尙書, 貞觀政要, 寶訓, 史書, 記言體, 帝王學

* 본 논문은 엄태용. “『國朝寶鑑』의 編纂과 刊行에 관한 書誌의 研究”(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8)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 국립한글박물관 학예연구원(taeyongem@korea.kr)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ss0311@skku.edu) (교신저자)

투고일: 2019년 2월 25일 최초심사일: 2019년 3월 6일 게재확정일: 2019년 3월 24일

서지학연구, 제77집, 287-322,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77.287]

<ABSTRACT>

This study has analyzed bibliographic pedigree, organization and contents of *Gukjobogam* (國朝寶鑑), and also examined *Sokgukjobogam* (續國朝寶鑑).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bibliographic pedigree of *Gukjobogam* have been investigated. The literature of Gieun-che (記言體, a style of writing to describe words), which was based on *Sangseo* (尙書), has been established as a history book by *Jeongkwanjeongyo* (貞觀政要) compiled in Tang Dynasty and was further compiled consistently as Song and Ming dynasty were continued by *Bohun* (寶訓). *Gukjobogam* was compiled by accommodating chinese Gieun-che history books in institutional and ideological manner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Bogam* were examined with regard to the organization and contents. Depending on the differences in forms of expression, *Gukjobogam* in Jeongjo Dynasty shows high convenience in search and reading compared to the first three *Bogam*. When it comes to the contents, many articles related to the basic duties of the state and the disciplines of kings were commonly found, and the others had differing subjects that were emphasized according to the compilation period. Most included articles were taken from *Sillok*, but *Yeongjongjobogam* (英宗朝寶鑑) holds relatively many articles with no reference from *Sillok*.

Moreover, a total of 17 articles quoting *Sokgukjobogam* published in Yeonsangun Dynasty, which is a missing book, were found from *Anlaldangjip* (顏樂堂集) and *Sillok* (實錄).

Key words: *Gukjobogam*(國朝寶鑑), *Bogam*(寶鑑), *Sangseo*(尙書), *Jeongkwanjeongyo*(貞觀政要), *Bohun*(寶訓), History book(史書), Description of words(記言體), Disciplines of kingship(帝王學)

1. 序 論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史志目錄인 「漢書」, 「藝文志」의 분류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史書는 일을 기록한 「春秋」와 말을 기록한 「尚書」로 구분되었다.¹⁾ 이 중에서 「尚書」 계통의 記言體 史書는 唐 吳兢이 편찬한 「貞觀政要」에 이르러 史書로서의 체제가 마련되었고 이후 국가의 역사편수제도 안으로 편입되어 宋·明의 「寶訓」과 淸의 「聖訓」이 왕조를 이어가며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²⁾

이러한 中國 記言體 史書의 문헌 전통과 역사편수제도가 朝鮮에 수용되어 독자적인 체제적·내용적 특징을 가지고 편찬된 것이 바로 「國朝寶鑑」이다.³⁾ 「國朝寶鑑」은 후대 守成 군주의 帝王學的 鑑戒 및 실제 정치의 참고를 목적으로 주로 「實錄」에서 역대 先王과 신하의 嘉言善政과 그들이 시행한 典章制度를 뽑아 편찬한 編年體 官撰 史書이다. 이는 朝鮮을 통치한 군왕의 제왕학적 덕목을 포함하는 문헌인 동시에 「實錄」과는 달리 당대의 역사를 선별하여 기술한 공개적 史書였으므로 각 시대의 주도적 정치상황과 철학사상이 선별적으로 반영되어 편찬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國朝寶鑑」은 朝鮮시대 전반에 걸친 제왕철학적 관념과 정치사상, 그리고 시대적 상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독특하면서도 매우 가치 있는 문헌이라고 볼 수 있다.⁴⁾

- 1) 「(影印)文淵閣四庫全書」 제249책 史部7 正史類 「漢書(班固 撰)」 권30 「藝文志第十」.
“左史記言, 右史記事, 事爲春秋, 言爲尚書.”
- 2)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記言體 史書의 명칭과 성격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政要體」, 「寶訓體」, 「寶鑑體」 등과 같은 용어 역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어떤 한 문헌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본 논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동종의 문헌 전체를 묶어 지칭함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劉知幾가 제안한 6家の 역사서 분류 중 「尚書家」의 체제적 이름인 「記言家」의 이름을 채용하여 「記言體 史書」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記言體 史書의 문헌 편찬의 사상적 「동기(모티프)」로서 「尚書」를, 체제적 典範으로 「貞觀政要」를 제시하였다. 이 중 「尚書」와의 연관성은 記言體 史書의 서문 등에서 「尚書」의 書名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堯·舜과 3대를 말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正祖의 「國朝寶鑑」 御製序文에서 “「實錄」과 「寶鑑」은 모두 史書이다. … 이 둘은 모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虞·夏·商·周의 史書를 孔子께서 100편으로 정리한 취지에 비추어보면 「寶鑑」이 더욱 근사한 점이 있다.[實錄與寶鑑, 皆史也. … 是二者皆不可闕 而揆諸虞夏商周之史 夫子所刪百篇之旨 則寶鑑爲尤近之.]”라고 언급한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尚書」를 시원으로 하는 記言體 史書 역시 사실을 기록하였지만 이는 「春秋」와 같이 「屬辭比事」의 형식을 갖추어 褒貶하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으며 문헌의 주된 편찬 목적은 帝王과 賢臣의 훌륭한 말을 기록하여 그들의 위치를 높이고 후대 위정자들의 본보기로 삼는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記言體 史書가 가지는 문헌 성격상의 특징은 이러한 편찬 목적과 효용상에 있고 문헌 명칭의 표면상의 의미만을 좇아 「말만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아니며, 「帝王의 鑑戒라는 편찬 목적상 사실보다는 말을 위주로 기록했다」라는 것에 가깝다.
- 3) 「國朝寶鑑」은 원래 定宗을 제외한 太祖-文宗 4대의 기사를 수록한 世祖代 「國朝寶鑑」을 가리키는 말이었고 「宣廟寶鑑」과 「肅廟寶鑑」을 아울러서 말할 때는 「寶鑑」의 명칭이 사용되었다. 「國朝寶鑑」이 역대 「寶鑑」 전체를 아우르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19조의 「寶鑑」을 合編한 正祖代 「國朝寶鑑」의 완성부터이다. 이후 새로 편찬된 「寶鑑」은 모두 「國朝寶鑑」의 書名을 계승하여 채택하였다. 하지만 正祖代 이후에도 「寶鑑」의 명칭 역시 역대의 「寶鑑」을 포괄하는 말로서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國朝寶鑑」의 명칭을 사용하되 각 편찬본을 지칭할 때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寶鑑」의 명칭 역시 필요에 따라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 4) 朝鮮의 역대 「寶鑑」은 世祖代 「國朝寶鑑」,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산실 추정), 英祖代 「宣廟寶鑑」(李端夏가 肅宗代에 진상한 寫本을 英祖代에 李德壽가 최종적으로 교정한 후 간행)과 「肅廟寶鑑」, 正祖代 「國朝寶鑑」, 憲宗代 「國朝寶鑑」, 純宗代 「國朝寶鑑」으로 총 7종이다. 世祖代 「國朝寶鑑」은 孝宗代와 英祖代에 각 1차례씩 重刊되었다. 光海君代에는 刊印의 명이 있었지만 현전하는 실물이 보이지 않아 명이 있는 후 실질적인 간인이

『國朝寶鑑』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國朝寶鑑』의 개략적인 편찬배경과 과정, 목적과 체제 등에 관하여 밝힌 기초적 연구⁵⁾가 이루어진 이후 크게 역사학계⁶⁾와 서지학계⁷⁾에서 진행되어 왔다. 또 근래 국립고궁박물관 출간의 『國朝寶鑑』 소장품 도록⁸⁾이 있다. 이 연구들은 正祖代 『國朝寶鑑』을 비롯한 특정한 편찬본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밝혔으나 이 문헌이 가지는 문헌학적 계통과 각 편찬본별 체제 및 내용 분석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⁹⁾ 또한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의 짧은 언급을 제외하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國朝寶鑑』의 문헌 계통적 연원이 되는 역대 中國 왕조의 記言體 史書を 살펴보는 한편 世祖代 『國朝寶鑑』, 『宣廟寶鑑』, 『肅廟寶鑑』, 正祖代 『國朝寶鑑』의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失傳된 『續國朝寶鑑』의 실제 간행 여부를 파악하고 『顏樂堂集』과 『實錄』에 수록된 『續國朝寶鑑』의 逸文을 모아 내용 일부를 복원하였다.

2. 『國朝寶鑑』의 문헌 계통

2.1 中國 記言體 史書

2.1.1 朝鮮의 관련 기록

正祖는 『國朝寶鑑』의 편찬 목적과 체제의 기원이 되는 同類의 서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가를 소유한 자는 모두 『實錄』을 갖고 있지만 『寶鑑』의 경우는 우리 조정에만 있는 것으로 그 작업이 光廟(世祖) 때부터 시작되었다. 前代를 상고해 보았을 때 宋의 『三朝寶訓』, 『傳法寶錄』과 明의 『祖訓錄』, 『文華寶訓』 등의 책 또한 先祖를 선양하거나 후손에게 교훈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간행된 『高宗純宗國朝寶鑑』이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제외하였다. 이 『寶鑑』의 편찬 실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신명호, “일제하高宗純宗實錄·高宗純宗國朝寶鑑의 편찬과 장서각 자료,” 『정신문화연구』 23(2)(2000), 146-167.을 참조.
- 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國朝寶鑑』(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국조보감』(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6).
정형우, “國朝寶鑑의 編纂經緯,” 『東方學誌』 33집(1982.10).
 - 6) 허태용, “正祖의 繼志述事 기념사업과 『國朝寶鑑』 편찬,” 『한국사상사학』 43집(2013. 4).
정재훈, “『國朝寶鑑』을 통해 본 朝鮮前期의 政治思想,” 『國史館論叢』 100집(2002. 12).
정재훈, “국정(國政)의 반성 -『국조보감』을 중심으로-,” 『조선의 국왕과 의례』(과주: 지식산업사, 2010).
 - 7) 김상호, “『國朝寶鑑』 1782年 板本の 刻手 研究,” 『서지학연구』 44집(2009. 12).
김상호, “『國朝寶鑑』 1848年 刊本の 刻手に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45집(2010. 3).
김정미, “正祖代 『國朝寶鑑』 刊印의 運用실태 연구,” 『서지학연구』 44집(2009. 12).
조계영,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幀과 保存 研究: 『濔源系譜紀略』과 『國朝寶鑑』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 8) 국립고궁박물관, 『國朝寶鑑』(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6).
 - 9) 『寶鑑』의 내용 분석은 정재훈(2002)의 연구에서 世祖代 『國朝寶鑑』과 『宣廟寶鑑』을 대상으로 시도한 바 있으나 전체 수록 기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앞 2개 『寶鑑』만이 연구대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言動을 併記하여 先祖의 德業까지 알게 하며 간략하면서도 빠뜨리지 않고 미더워서 증거로 삼을 만한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寶鑑」만한 것이 없으니, 大聖人の 制作이 정말 훌륭하다고 하겠다.¹⁰⁾

金尙喆, 李福源, 徐命膺 등이 올린 箋文에서도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다.

삼가 생각건대, 帝王의 계책은 모두 책에 소상히 실려 있습니다. 文王과 武王이 創業하고 守成한 방법은 唐의 「貞觀政要」에서 알 수 있고 聖神의 태평 정치는 宋의 「三朝寶訓」에 아직도 실려 있습니다. (「寶鑑」의) 체제는 木天[翰林院]에서 褒貶[褒貶]한 것과는 다르기에 별도로 편찬한 것이었고¹¹⁾ 뜻은 王府의 關和¹²⁾와 같아서 龜鑑이 될 만한 법을 길이 남겼습니다.¹³⁾

「正祖實錄」에 수록된 「國朝寶鑑」 總敍에도 문헌 계통에 대한 기록이 있다.

「寶鑑」의 體裁는 宋 仁宗의 「三朝寶訓」에서 비롯되었는데, 역대로 내려오면서 앞 다투어 義例를 만들어냈다. 「法寶新錄」·「傳法寶錄」·「三朝聖訓」과 같은 것들은 아래로 家法을 외워서 임금에게 덕을 권면하는 것이고, 「祖訓錄」·「皇朝寶訓」·「文華大訓」과 같은 것들은 위로 先烈을 선양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 모두가 똑같이 二典三謨의 遺範이고 傳記의 일종이다.¹⁴⁾

제시된 서적 중 「國朝寶鑑」의 문헌적 기원으로서 직접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제왕의 언행을 기록한 史書인 「貞觀政要」, 「三朝寶訓」, 「皇朝寶訓」(「皇明寶訓」)이다.¹⁵⁾ 그런데 「貞觀政要」와

- 10)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 국조보감」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6). 一.
“有國者, 皆有實錄, 而寶鑑則惟我朝有之, 其作者光廟始也. 攷之前代, 如宋之三朝寶訓, 傳法寶錄, 皇明之朝訓錄, 文華大訓之類, 非不亦揚先而裕後也, 若其並記言動, 兼該德業, 約而不遺, 信而可徵, 未有若我朝之寶鑑, 大聖人制作, 信乎其盡美矣.”
- 11) 일반적 史書의 목적이 褒貶에 있는 것과는 달리 「三朝寶訓」, 「寶鑑」과 같은 문헌의 목적은 선대왕의 공덕을 찬양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문헌의 체제를 달리하였다는 뜻으로 생각된다. 正祖도 말하기를 “寶鑑은 功德를 기술하는 것이어서 史筆과는 같지 않아 체제가 다르다”고 하였다(「日省錄」 正祖 5년 (1781) 7월 17일, 予曰: “寶鑑所以紀述功德, 與史筆不同, 纂輯之際, 體段自別.”).
- 12) 「尙書」 ‘五子之歌’의 “衡石과 관계되는 물건들이 원활하게 통용되면 王의 창고가 항상 풍족할 수 있을 것인데 (太康이) 그 緒業을 실추하여 宗族을 멸망시키고 후손도 끊기게 하였네.[關石和鈞, 王府則有, 荒墜厥緒, 覆宗絕祀.]”에서 유래한 말이다. 의미는 첫째 ‘공평하고 훌륭한 제도’ 그 자체를 말하거나, 둘째 ‘先王의 훌륭한 제도로써 후대 임금이 지켜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후자의 의미를 채용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13) 민족문화추진회 편(1996), 一一.
“竊有帝王之洪猷, 咸有方策之昭布. 文武創守之道, 唐貞觀之政要可徵, 聖神熙洽之治, 宋三朝之寶訓尙在. 體異木天之褒貶, 別爲編摩, 義同王府之關和, 永垂監法.”
- 14) 「正祖實錄」 14권, 正祖 6년 11월 24일 정사 1번째 기사.
“寶鑑之體, 肇自宋仁宗之三朝寶訓, 而歷代相沿, 競出義例. 如法寶新錄傳法寶錄三朝聖訓之屬, 下所以誦家法, 而勉君德也, 祖訓錄皇朝寶訓文華大訓之屬, 上所以揚先烈, 而貽後昆也. 均之爲典謨之遺範, 傳記之一類.”
- 15) 그 외 總敍에 언급된 「祖訓錄」은 明 太祖 朱元璋 재위 시에 편찬된 일종의 訓諭書이며, 「文華大訓」은 明 憲宗이 太子인 朱佑樞(후의 明 孝宗)을 교육하기 위해 지은 서적으로 편찬 체제, 방법면에서 문헌적 성격이 다소 다르다. 「法寶新錄」, 「傳法寶錄」, 「三朝聖訓」은 어떠한 서적을 지칭하는지 확실치 않다. 다만 「宋史」 권10 ‘本紀第十: 仁宗二’에 “景祐 4년(1037) 4월 乙巳에 呂夷簡이 「景祐法寶新錄」을 올렸다”고 하였고, 「宋史」 권15 ‘本紀第十五: 神宗二’에 “元豐 2년(1079) 6월 戊申에 蔡确에게 명을 내려 「傳法寶錄」을 편수토록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두 종의 책이 正祖가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비슷한 시기에 史官 劉知幾가 편찬한 『史通』에서는 『尙書』를 시원으로 하는 記言家 문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2.1.2 『史通』

『史通』은 당의 史官인 劉知幾가 편찬한 역사이론서이다. 劉知幾는 『史通』에서 史書의 體例를 尙書家(記言家), 春秋家(記事家), 左傳家(編年家), 國語家(國別家), 史記家(通古紀傳家), 漢書家(斷代紀傳家)의 여섯 부류로 나누었다.¹⁶⁾ 『尙書』와 『春秋』의 체계를 記言과 記事로 분류한 것은 『漢書』 『藝文志』와 『禮記』 『玉藻』¹⁷⁾의 내용에서 유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⁸⁾

이 중 주목하여 볼 것은 記言家[尙書家]에 대한 언급이다. 劉知幾는 먼저 『尙書』를 孔子가 虞이하 4대의 典籍에서 ‘훌륭한 것[善者]을 선별하여’ 만들었다는 것, 典·謨·訓·誥·誓·命의 六體로 표현되는 임금과 신하의 말과 그 외의 人事, 地理, 災異, 喪禮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문헌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⁹⁾

16) 괄호 안의 내용은 浦起龍의 주석서인 『史通通釋』에서 체제에 따라 명칭을 다시 붙인 것이다(이운화 譯, 『史通通釋』 (서울: 소명출판, 2012), 50. 참조).

17) 『禮記』 『玉藻』.

“動則左史書之, 言則右史書之.”

18) 『尙書』와 『春秋』의 체계를 각각 ‘記言’과 ‘記事’로 이해하는 관점에 비판적인 논조도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清代 학자인 章學誠의 견해인데 그는 『文史通義』 『書教上』에서 “후세의 유학자들이 제대로 살피지 않고 『尙書』가 말의 기록[記言]이고 『春秋』가 사실의 기록[記事]이라고 나눈 것은 대단한 실수이다. 『春秋』는 『春秋』에 대한 풀이를 버리고 사실의 목록만 공허하게 남길 수 없는 법이다. … 삼대의 왕들을 기록한 『尙書』의 訓이나 誥와 같은 글에는 말의 기록이지만 사실도 갖추어져 있다.”(章學誠 著·葉瑛 校注·임형석 譯, 『文史通義校注』 (서울: 소명출판, 2011), 108.)라고 하였다. 현대 학자인 劉節은 章學誠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尙書』에는 記言의 문장이 있는가 하면 記事나 제도를 기록한 문장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논할 수 없다.”(劉節 著·辛太甲 譯, 『中國史學史 講義』 (서울: 신서원, 2000), 35.)라고 하였다. 하지만 근대에 가까운 清代의 인물인 章學誠의 비판 이전의 전통적 시각에서는 『漢書』 『藝文志』, 『禮記』 『玉藻』 등에 근거하여 『尙書』의 체계를 ‘記言’으로 인식해 온 것은 비교적 명확하다. 이집에서 다음의 두 건의 언급은 『尙書』와 記言體 史書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禮記正義』의 孔穎達 疏: “經文에서 ‘말에 대해서는 右史가 기록한다.’라고 하였는데, 『尙書』는 말과 경계지침[言語]에 대한 사안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尙書』를 右史가 기록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여긴 것이다. … 『春秋』에도 비록 말을 기록한 것이 있지만 이것은 행동에 따라 말을 하게 된 것이며, 그 말을 기록한 것은 적다. 『尙書』에도 비록 행동에 대해 기록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그 말을 하게 된 것에 따라서 행동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며, 또한 행동을 기록한 것이 적다.”[正義曰: “經云 ‘言則右史書之’, 尙書記言誥之事, 故以尙書當右史所書. … 春秋雖有言, 因動而言, 記言少也. 尙書雖有動, 因言而稱動, 亦動爲少也.”](陳澧 編·정병섭 譯, 『譯註禮記集說大全: 玉藻 附 正義·訓纂·集解』 (서울: 학고방, 2013), 97-100). 劉知幾 『史通』: “예전에 말에 대한 기록은 『尙書』, 사건에 대한 기록은 『春秋』라고 하였는데, 좌우에 두 史官을 두어 각기 직분을 나누어 맡겼다. 齊 桓公과 晉 文公이 패권을 잡고 동맹을 맺은 일은 春秋時代에 대단한 사건이었지만 『尙書』에는 그 기록이 빠져있다. 秦의 군대가 晉 襄公의 군대에게 대패하자 老臣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秦 穆公이 뉘우치며 한 맹세는 『尙書』 중에서 매우 중요한 말이었지만, 『春秋』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로써 말과 사건은 구별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古者言爲尙書, 事爲春秋, 左右二史, 分尸其職, 蓋桓文作霸, 糾合同盟, 春秋之時, 事之大者也, 而尙書缺記. 秦師敗績, 穆公誠誓, 尙書之中, 言之大者也, 而春秋靡錄, 此則言事有別, 斷可知矣.”](오향녕 譯, 『사통(한정보급판)』 (서울: 역사비평사, 2014), 98-99).

19) 오향녕 譯, 『사통(한정보급판)』 (서울: 역사비평사, 2014), 63-64.

다음으로 劉知幾는 「尙書」 이후 記言家의 역사에 대하여 언급한다. 記言家는 漢, 魏 시대에는 보이지 않다가 晉代에 들어와 孔衍이 여러 史書의 내용 중에서 ‘아름다운 글과 본받을 만한 말[美詞典言]’을 취하고 편목을 정하여 「漢尙書」 등을 편찬하였다. 隋代에 와서는 王劭가 隋文帝 시기의 일을 기록하면서 같은 부류를 모으고 항목을 만들어 「隋書」를 편찬하였다. 「尙書」와 그 체례를 모방한 문헌들은 말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만을 선별하여 기술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이면 그 말이 다소 길더라도 모두 실고, 반대로 기록할 만한 말이 보이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빼거나 줄여서 기술하였다.²⁰⁾

이어서 記言家가 전승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 記言家의 문헌은 사실이 비교적 단순했던 上古 시대에는 간략하게 편집해도 무방했지만 문헌이 크게 늘어나 사실이 복잡해진 후일에 와서도 史書의 형식을 갖추지 않고 「尙書」의 체례만을 답습하여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²¹⁾ 이 때문에 「尙書」를 효시로 하는 記言家는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史書의 기능을 상실하여 隋代 이후 더 이상 편찬되지 못하였다.²²⁾

劉知幾는 이에 더하여 ‘載言’이라는 별도의 편을 만들어 正史내에서의 記言 기록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史書에서 언행을 기록한 독립된 篇이 없는 것을 문제 삼으면서 ‘表’와 ‘志’ 이외에 별도로 ‘書’라는 편명을 세워 제왕의 制冊과 誥命, 신하들의 章表와 移檄 및 詩賦, 문장들을 수록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²³⁾ 劉知幾는 「史通」에서 내용 구성의 뿌리가 되는 六家편과 二體편에

“至孔子觀書於周室，得虞夏商周四代之典，乃刪其善者，定爲尙書百篇。… 蓋書之所主，本於號令，所以宣王道之正義，發語言於臣下，故其所載，皆典謨訓誥誓命之文。至如堯舜二典直序人事，禹貢一篇唯言地理，洪範總述災祥，顧命都陳喪禮，茲亦爲例不純者也。”

20) 오향녕 譯(2014), 65-66.

“自宗周既殞，書體遂廢，迄乎漢魏，無能繼者。至晉廣陵相魯國孔衍，以爲國史所以表言行，昭法式，至於人理常事，不足備列。乃刪漢魏諸史，取其美詞典言，足爲龜鏡者，定以篇第，纂成一家。由是有漢尙書後漢尙書漢魏尙書，凡爲二十六卷。至隋祕書監太原王劭，又錄開皇仁壽時事，編而次之，以類相從，各爲其目，勒成隋書八十卷。尋其義例，皆準尙書。原夫尙書之所記也，若君臣相對，詞旨可稱，則一時之言，累篇咸載。如言無足紀，語無可述，若此故事，雖有脫略，而觀者不以爲非。”

21) 劉知幾는 記言家가 本紀와 列傳과 같은 형식을 취하지 않았음을 예로 들어 그 체제적 미비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浦起龍이 「史通通釋」에서 “紀傳도 없고 編年으로 된 것도 아니며 다만 자질구레한 말을 주워모았을 뿐이니 어찌 史書를 이루겠는가. … 「尙書」는 분명히 史書 체례를 처음 열었으나 編年體도, 紀傳體도 아니었으니 원래 史體의 正宗은 아니었다.[既無紀傳，又不編年，徒然掇拾瑣言，豈得成史。… 尙書固是史家開體，然不編年，不紀傳，原非史體正宗.]”(이운화 譯(2012). 60-61.)라고 주석한 점을 고려하면 史書의 필수적 체제인 紀傳과 編年 중 어느 형식도 취하지 않아 후대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술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22) 오향녕 譯(2014), 66.

“爰逮中葉，文籍大備，必剪裁今文，摸擬古法，事非改轍，理涉守株。故舒元所撰漢魏等書，不行於代也。若乃帝王無紀，公卿缺傳，則年月失序，爵里難詳，斯並置之疏忽，而今之所要。如君懋隋書，雖欲祖述商周，憲章虞夏，觀其所述，乃似孔子家語臨川世說，謂畫虎不成反類犬也。故其書受嗤當代，良有以焉。”

23) 오향녕 譯(2014), 99-102.

“案遷固列君臣於紀傳，統遺逸於表志，雖篇名甚廣，而言無獨錄。愚謂凡爲史者，宜於表志之外，更立一書。若人主之制冊誥命，群臣之章表移檄，收之紀傳，悉入書部，題爲制冊章表書，以類區別。他皆放此，亦猶志之有禮樂志，刑法志者也。… 又詩人之什，自成一家。故風雅比興，非三傳所取。自六義不作，文章生焉。若韋孟諷諫之詩，揚雄出師之頌，馬卿之書封禪，賈誼之論過秦，諸如此文，皆施紀傳。竊謂宜從古詩例，斷入書中，亦猶舜典列元首之歌，夏書包五子之詠者也。夫能使史體如是，庶幾春秋尙書之道備矣。故前史之所未安，後史之所宜革。是用

바로 이어 재언편을 실음으로써 記言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劉知幾의 관심과 제안이 正史인 역대의 紀傳體 史書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후술할 『貞觀政要』의 편찬이다.

2.1.3 唐: 『貞觀政要』

『貞觀政要』는 唐의 史官 吳兢이 唐 太宗과 신하의 말을, 또는 양자 사이의 문답을 독자적인 類目 분류에 따라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編年의 방식에 따라 총 10권으로 수록한 문헌이다. 이는 ‘아름다운 글과 본받을 만한 말’을 편목을 정하여 신는 記言家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編年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劉知幾가 지적한 記言家의 史書로서의 체제적 미비점을 보완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관계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그 근거를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吳兢이 劉知幾와 동시기에 활동하면서 『武后實錄』 등의 官撰 史書의 편찬에 함께 참여한 史官이었으며 당시 唐 정부의 官撰집단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劉知幾가 신뢰한 몇 안되는 인물이었다는 점이다.²⁴⁾ 따라서 記言 기록에 대한 劉知幾의 제안적 논조를 吳兢이 수용하였고 이것이 『貞觀政要』 편찬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劉知幾가 唐 정부의 史書 편찬 官撰집단임을 감안해보면 『史通』의 내용은 당대 史官들의 전반적 공감대를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史通』에서 드러나는 記言家 史書의 필요성에 대한 史官 官撰 집단 내부의 공통적 의견이 『貞觀政要』의 편찬을 이끌어 냈을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貞觀政要』는 『新唐書』 ‘藝文志: 雜史類’에 저록되어 있다.²⁵⁾

『貞觀政要』의 편찬 목적은 吳兢의 ‘貞觀政要序’에서 살펴볼 수 있다.

太宗 때의 정치 교화는 참으로 볼 만하니 먼 옛날 이래로 없던 것이다. 세상에 전하여 교화를 세운 훌륭한 일과 典謨와 諫奏의 글 중에 큰 도모를 널리 밝히고 지극한 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敢同有識，爰立茲篇，庶世之作者，睹其利害。如謂不然，請俟來哲。”

24) 劉知幾와 吳兢의 개인적 관계성은 劉知幾 자신의, 또는 그와 관련된 다음의 여러 언급에서 드러난다. “永城의 朱敬則, 沛國의 劉允濟, 義興의 薛謙光, 河南의 元澹, 陳留의 吳兢, 壽春의 裴懷古 등도 (나의) 논의를 인정하고 도리나 학술을 서로 알아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숨은 생각까지 모두 털어놓을 수 있었다(『史通』 ‘自敘’: 오향녕 譯(2014), 578-579).” ; “則天武后 長安 연간에 나는 正諫大夫 朱敬則, 司封郎中 徐堅, 左拾遺 吳兢과 함께 조칙을 받고 『唐書』를 개정하여 80권을 편찬했고 中宗 神龍 연간에도 徐堅, 吳兢 등과 함께 『則天實錄』을 중수하여 30권을 편찬했다(『史通』 ‘古今正史’: 오향녕 譯(2014), 677-678).” ; “子玄(劉知幾의 字)은 徐堅, 元行沖, 吳兢 등과 사이좋게 지냈는데 ‘천하에 나를 아는 사람은 이 몇 사람뿐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新唐書』 卷132. ‘劉子玄傳’: 오향녕 譯(2014), 1008).” ; “子玄은 속으로 『史通』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미진한 데가 있었기 때문에, 國史를 吳兢에게 맡기고 따로 『劉氏家史』와 『譜考』를 편찬했다(『新唐書』 卷132 ‘유자현전’: 오향녕 譯(2014), 1013).” 이상의 언급을 통해 劉知幾가 吳兢과 함께 여러 차례 唐 정부의 史書를 편찬하였으며 그에 대한 높은 개인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5) 『(影印)文淵閣四庫全書』 卷273 史部31 正史類 『新唐書』 ‘志第四十八: 藝文二’.
“吳兢 太宗勅史一卷, 又貞觀政要十卷.”

것을 나에게 명하여 골고루 뽑아 기록하게 하니 체제의 대략이 모두 드러나 규모를 이루었다. ... 바라건데 국가를 소유한 이들이 이전의 법도를 잘 준수하여 훌륭한 점을 골라 따르면 장구한 왕업이 더욱 빛나고 큰 공적이 더욱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堯·舜만 높이 계승하며 文·武만 본받아 빛낼 필요가 있겠는가.²⁶⁾

이를 통해 보면 뛰어난 제왕이었던 唐太宗의 업적 중에서도 政要를 간추려 후세의 국가를 소유한 군왕들이 그것을 보고 잘 따름으로써 장구한 왕업을 더욱 빛내고, 큰 공적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별기사의 전거에 있어서는 紀昀의 「四庫全書總目提要」, 「貞觀政要」에서 “宋 「中興書目」에서 말하기를 吳兢이 「太宗實錄」 외에 여러 신하들과 문답한 말을 채록하여 이 책을 지어 반성하고 경계하는데 대비하였다. 총 40편이다.”²⁷⁾라고 언급한 것을 통하여 吳兢이 「太宗實錄」 외의 사료를 취하여 책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貞觀政要」의 체제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貞觀政要」는 총 10권이며 제왕으로서 배워야 할 내용을 주제별로 묶어 ‘君道’, ‘政體’ 등 40篇으로 나누고 각 편 아래에 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뽑아 각기 한 章으로 배치하였다. 각 장은 編年體로 배열하였는데,²⁸⁾ 「貞觀政要」는 唐貞觀 연간에 해당하는 기사만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각 장의 초입에서 ‘貞觀某年’으로 시작하며 이는 編年體의 형식을 취하는 모든 편에서 동일하다.

이와 같은 「貞觀政要」의 편찬 목적과 체제는 宋의 「寶訓」, 明의 「皇明寶訓」, 淸의 「聖訓」과 같은 中國 記言體 史書의 典範으로서 계승되었다.

2.1.4 宋: 「寶訓」

「寶訓」은 宋代의 독창적 것으로 주로 進講의 교재로 채택되어 후세의 군주를 훈도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그 내용은 本朝의 이미 사망한 군주의 嘉言善政을 대상으로 門과 類를 나누고 본보기로 삼는 것이다.²⁹⁾ 宋代 「寶訓」은 失傳되었지만 宋代 편찬 類書의 관련 내용과 逸文을 통해 편찬과정 및 체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宋代 「寶訓」 중에서 가장 먼저 완성된 것은 「三朝寶訓」이다. 「三朝寶訓」은 宋仁宗 天聖 5년(1027) 10월 王曾이 “唐史官 吳兢이 「正史」, 「實錄」의 기록 이외에太宗이 여러 신하들과 문답한 말을

26) 「(影印)文淵閣四庫全書」 제407책 史部165 雜史類 「貞觀政要(吳兢撰)」 「貞觀政要原序」.

“太宗時政化, 良足可觀, 振古而來, 未之有也. 至於垂世立教之美, 典謨諫奏之詞, 可以弘闡大猷, 增崇至道者, 爰命不才, 備可甄錄, 體制大略, 咸發成規. … 庶乎有國有家者, 克尊前軌, 擇善而從, 則可久之業, 益彰矣, 可大之功, 尤著矣, 豈但祖述堯舜, 憲章文武而已哉.”

27) 「(影印)文淵閣四庫全書」 제407책 史部165 雜史類 「貞觀政要(吳兢撰)」 「提要」.

“宋中興書目稱吳兢, 于太宗實錄外, 采其與群臣問答之語作爲此書 用備觀戒 總四十篇.”

28) ‘任賢’ 등 일부 편목의 경우는 예외.

29) 李建國, “『群書考索』与宋代“宝訓”, 『古籍整理研究學刊』 第1期(東北師範大學古籍整理研究所, 2009. 1), 22.

기록하여 『貞觀政要』를 지었는데, 지금 太祖, 太宗, 眞宗의 『實錄』, 『日曆』, 『時政記』, 『起居注』³⁰⁾의 사적에서 『正史』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별도로 1책을 만들어 『正史』와 병행하고자 합니다.”³¹⁾라고 주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天聖 10년 正月에 이르러 仁宗이 명을 내려 『三朝寶訓』을 이름으로 하고 同年 2월 癸卯에 모두 30권으로 완성하였다. 『三朝寶訓』(太祖, 太宗, 眞宗) 이후 『兩朝寶訓』(仁宗, 英宗)부터 마지막 『寧宗寶訓』까지 13朝의 『寶訓』이 北宋과 南宋시대를 이어가며 편찬되었다.

宋代 『寶訓』의 편찬기구는 초기에는 門下省에 編修院을 두어 『國史』, 『實錄』, 『日曆』과 함께 『寶訓』을 편수하는 책임을 맡게 하였다. 神宗 元豐³²⁾ 이후 編修院을 國史館으로 바꾸었고, 南宋 시기에 들어와 實錄院에서 『實錄』과 함께 『寶訓』을 편수하였다.³³⁾

宋代 『寶訓』의 수록 기사는 『三朝寶訓』과 『兩朝寶訓』의 경우 『國史』를 편찬한 후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 『實錄』, 『日曆』, 『時政記』, 『起居注』의 기록 중에서 선별하였고 『神宗寶訓』부터는 각 조의 『國史』 편찬과 동시에 혹은 그 이전에 편수가 이루어졌다.³⁴⁾ 따라서 전자의 경우 『國史』 편입 기록과 상이한 내용이 『寶訓』에 삽입되었으나 神宗代 이후부터는 『國史』의 내용과 많은 부분 중복되었을 것이다. 『宋史』 『藝文志』에서도 이 차이를 반영하여 전자의 『三朝寶訓』과 『兩朝寶訓』은 『別史類』, 그 외 『寶訓』은 『故事類』에 저록하고 있다.³⁵⁾

書名은 『寶訓』의 편찬이 관 주도로 제도화되면서 1代인 경우 『某朝寶訓』, 合集인 경우 『兩朝寶訓』, 『三朝寶訓』등으로 정례화되었다.³⁶⁾ 기사의 수록 형식과 배열은 宋代 『古今源流至論』 등에 수록된 逸文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³⁷⁾ 각 기사는 章首에 『建隆元年』과 같이 연수를 쓰고 이어서 선대 황제 또는 신하의 말을 『某曰』 형식으로 싣고 있다. 또한 『昌谷集』, 『玉海』, 『經幄管見』 등에 근거하면 宋代 『寶訓』의 수록 기사가 일정한 類目 분류에 따라 배열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⁸⁾

30) 『起居注』는 제왕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고, 『時政記』는 신하와 군국대사를 상의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兩者 및 여러 부서의 보고에 근거하여 편수한 것이 『日曆』이며, 『日曆』 및 그 외의 자료에 근거하여 편수한 것이 『實錄』이다(孔學, 『宋代『寶訓』纂修考』, 『史學史研究』 第3期(1994), 56).

31) 『(影印)文淵閣四庫全書』 제944책 子部250 類書類 『玉海』(王應麟 撰), 권49 『藝文』: 天聖三朝寶訓.
“天聖五年十月乙酉, 監修國史王曾言: “唐史官吳兢, 於正史實錄外, 錄太宗與群臣問對之語, 爲貞觀政要. 今欲太祖太宗眞宗實錄, 日曆, 時政記, 起居注, 其間事迹 不入正史者 別爲一書 與正史並行.” 從之.”

32) 北宋의 연호. 1078-1085년.

33) 倪道善, “『寶訓』, 『聖訓』考,” 『山西檔案』 第5期(2006), 14-15.

34) 孔學(1994), 62-63.

35) 『(影印)文淵閣四庫全書』 제283책 史部41 正史類 『宋史』(托克托等 撰), 권203 『藝文志』: 別史類.

“呂夷簡, 三朝寶訓三十卷. … 林希 兩朝寶訓二十一卷 … 六朝寶訓一部[卷亡].”

『(影印)文淵閣四庫全書』 제283책 史部41 正史類 『宋史』(托克托等 撰), 권203 『藝文志』: 故事類.

“呂夷簡·林希進五朝寶訓六十卷. … 沈該進神宗寶訓一百卷. 神宗寶訓五十卷[不知集者姓名]. 洪邁集哲宗寶訓六十卷. 欽宗寶訓四十卷, … 高宗寶訓七十卷, 孝宗寶訓六十卷[竝國史實錄院進]. 史彌遠孝宗寶訓六十卷.

… 永熙寶訓二卷[李昉子宗愕纂]. … 國朝寶訓二十卷. … 曾鞏德音寶訓三卷.”

36) 『國朝寶鑑』을 『宣廟寶鑑』, 『肅廟寶鑑』, 『四朝寶鑑』, 『十九朝寶鑑』, 『三朝寶鑑』 등으로도 호칭하는데 宋代 『寶訓』의 명명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37) 『(影印)文淵閣四庫全書』 제942책 子部248 類書類 『古今源流至論續集』(林駟 撰)에 수록되어 있는 『寶訓』의 내용을 참조함.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宋代 「寶訓」이 「貞觀政要」의 체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貞觀政要」는 太宗 1대만이 대상이지만 宋代의 「寶訓」은 후대 일부를 제외하면 그 賢否에 관계없이 모든 군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는 宋代에 들어와 記言體 史書의 편찬이 일정 부분 정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1.5 明: 「皇明寶訓」

「皇明寶訓」의 편찬은 詹同, 宋濂 등이 洪武 7년(1374) 5월에 「大明日曆」을 완성한 후 “「日曆」이 天府에 비장되어 있어 사람들이 보지 못하니 唐의 「貞觀政要」를 본받아 聖政을 나누어 짐록하여 천하에 널리 보일 것”³⁹⁾을 주청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明 太祖 이후의 「實錄」과 「寶訓」은 洪武 연간에 편찬된 「大明日曆」⁴⁰⁾과 「皇明寶訓」을 모방한 것으로,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면 선대 황제의 「實錄」을 찬수하고 바로 이어 「寶訓」을 편찬하는 것이 제도화되었다. 洪武 연간에 明 太祖의 「皇明寶訓」 5권이 완성된 후 永樂 16년(1418)에 15권으로 증보한 「大明太祖高皇帝寶訓」이 완성되었다. 그 이후 역대로 「明太宗文皇帝寶訓」부터 「明熹宗愍皇帝寶訓」까지의 「寶訓」이 편찬되었다. 明代 「寶訓」은 「明史」, 「藝文志: 正史類」에서 각 황제의 「實錄」에 연이어 저록되어 있다. 이는 宋代의 「寶訓」이 故事類 및 別史類에 저록된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明代에 들어와 「寶訓」이 正史로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記言體 史書가 기본적으로 군왕 측에 유리한 서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寶訓」의 正史 편입은 明代에 확립된 강력한 황제권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明 「寶訓」의 편찬 목적은 明 太宗의 「大明太祖高皇帝寶訓序」에서 살펴볼 수 있다.

朕이 儒臣에게 명하여 太祖의 「寶訓」을 찬집케 하고 항상 두고 읽어보았는데, 萬世의 龜鑑이 될 만하니, 子孫·臣庶가 공경하고 지켜서 영구히 보존하면 천하 국가가 유구하게 변함이 없을 것이다. … 堯, 舜, 禹, 湯, 文·武의 書 중에 典·謨·訓·誥·誓·命의 형식[文體]을 가지고 있는 것을 史臣이 기록하여 當時에 훈계하고 萬世·天下에 드리워서 후세에 쓰면 다스려지고 쓰지 않으면 어지러웠으니 治亂의 기틀은 쓰고 쓰지 않음에 달려 있을 뿐이다. 아이! 멀리는 옛날에 범이 되었고 가까이는 나에게 범이 된다.⁴¹⁾

38) 許振興은 曹彥約의 「昌谷集」 ‘內引朝辭筭子第二’에 근거하여 「三朝寶訓」에 88개의 類目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經幄管見」, 「玉海」를 살펴 43개의 類目を 확인하였다(許振興, “宋代「三朝寶訓」篇目考,” 「古籍整理研究學刊」 第4·5期(2000), 84-85). 또한 「玉海」를 통해 「神宗寶訓」이 73門, 「哲宗寶訓」이 100門으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9) 「(影印)文淵閣四庫全書」 제299책 史部57 正史類. 「明史(張廷玉等 奉勅撰)」 권136. 「列傳第二十四: 詹同傳」. “(洪武)六年, … 請編日曆, 帝從之, 命同與宋濂爲總裁官, 吳伯宗等爲纂修官, 七年五月書成. … 同等又言 日曆秘天府 人不得見, 請訪貞觀政要, 分輯聖政, 宣示天下, 帝從之, 乃分四十類, 凡五券, 名曰皇明寶訓.”

40) 唐, 宋시기의 「日曆」은 모두 “日所錄事” 즉, 매일의 기록으로서 이름과 실체가 서로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大明日曆」은 唐, 宋의 「日曆」과는 명확히 달라서 그저 명칭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적으로는 「實錄」을 수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實錄」은 모두 어떤 한 명의 황제가 崩御한 후에 곧바로 史官이 六曹와起居의 史料를 활용하여 편찬한다. 「大明日曆」은 朱元璋의 치세 때에 편수되었기 때문에 「日曆」이라 하고 「實錄」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실제로는 「大明日曆」과 이후의 역조 「實錄」은 찬수체제, 편찬구성, 史料의 구분상에 있어 완전히 동일하다(牛建強, “明初大明日曆與皇明寶訓的纂修,” 「史學史研究」 第1期(2000), 68).

明太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先王이 남긴 遺訓의 중요성이다. 후손과 신하가 그것을 보존하여 쓰면 천하가 다스려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지러워진다. 先王의 遺訓이 담긴 『寶訓』을 편찬하고 후세에 전함으로써 천하를 유구하게 변함이 없도록 다스리려고 한 것이다.

明 『寶訓』의 사료는 洪武 연간의 『皇明寶訓』이 『起居注』와 『日曆』에서 취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實錄』에서 선별하였다. 明 『寶訓』의 편찬은 永樂이후로 『實錄』과 함께 史館이 담당하였으며 편수관원은 翰林院의 관원이 주가 되었지만 기타 衙門의 관원을 이동 배치하여 협조하기도 하였다.⁴²⁾

明 『寶訓』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唐의 『貞觀政要』와 동일하다. 즉, 선별한 기사를 類目을 나누어 수록하되 그 배열은 編年으로 하는 것이다. 『大明太祖高皇帝寶訓』을 예로 들면 총 51개의 類目으로 나누고 각각의 類目 안에서는 ‘洪武某年’을 각 기사 머리 붙여 구분하였으며 시간이 빠른 것을 먼저, 늦은 것을 나중에 배열하였다.

2.2 中國 記言體 史書와 『國朝寶鑑』의 比較 考察

『國朝寶鑑』과의 비교를 위해 中國 記言體 史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中國 記言體 史書 비교

시대	先秦	晉	隋	唐	宋	明
서명	『尚書』	『漢尚書』 『後漢尚書』 『漢魏尚書』	『隋書』	『貞觀政要』	『寶訓』	『寶訓』
저자	孔子 筆削	孔衍	王劭	吳兢	編修院, 實錄院	翰林院
왕대	堯舜-周	漢-魏 (왕대 불명)	隋(왕대 불명)	唐(太宗 1대)	太祖-寧宗 13조	太祖-熹宗 15조
목록	『漢書』, 『藝文志』	『史通』	『史通』	『新唐書』, 『藝文志』 雜史類	『宋史』, 『藝文志』 別史類(앞 5조) 故事類(그 외 8조)	『明史』, 『藝文志』 正史類
체제	記言	記言. 유목 분류	記言. 유목 분류	記言. 유목 분류. 編年	記言. 유목분류. 編年	記言. 유목분류. 編年
전거	上古 시대 역사 문서	불명	불명	『太宗實錄』 외	『實錄』, 『日曆』, 『時政記』, 『起居注』	『實錄』
비고	.	失傳	失傳	.	- 失傳(『玉海』 등에 逸文) - 편찬시 『貞觀政要』 모방 언급	- 『實錄』과 연이어 편찬 - 편찬시 『貞觀政要』 모방 언급

41) 『四庫全書存目叢書』 史部53 『皇明寶訓：大明太祖高皇帝寶訓』, 『大明太祖高皇帝寶訓序』.

“朕命儒臣纂集，皇考太祖聖神文武欽明啓運峻德成功統天大孝高皇帝寶訓，恒伏讀之，足爲萬世龜鑑，子孫臣庶，克敬守之永保，天下國家 於悠久可無替矣。… 此堯舜禹湯文武之書有典謨訓誥誓命之名。史臣錄之，訓於當時，而垂於萬世天下，後世用之則治，不用則亂，此治亂之機在於用不用耳。於乎！遠法於古，近法於我。”

42) 倪道善(2006), 14-15.

이상과 같이 정리한 中國 記言體 史書의 편찬 양상을 朝鮮의 「國朝寶鑑」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계통적 유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宣廟寶鑑」의 후반부 등 일부 예외는 있으나 수록된 내용이 先王의 傳敎, 신하의 上疏文, 임금과 신하간의 問答 등 ‘말의 기록’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國朝寶鑑」은 수록 기사의 서두에서 배경이 되는 사건을 압축하여 짧게 서술한 후 왕 또는 신하의 말을 요약하지 않고 배치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후대의 「寶鑑」 일수록 先王의 업적을 短文으로 여러 건을 수록하거나 전장제도에 관한 상세한 서술이 많아지지만 전체 내용 구성상 핵심이 되는 것은 왕이나 신하가 여러 형식을 취하여 언급한 말의 기록이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實錄」을 완성한 후 그것을 주요 전거로 하여 국가의 史書 편수기구 및 史官에 의해 편찬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唐, 宋 시기보다는 朝鮮과 시대적으로 가까운 明의 제도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世祖代 「國朝寶鑑」에서 전거가 되는 「實錄」 기사를 일부 변경하여 수록하거나 正祖代 「國朝寶鑑」이 「承政院日記」, 「備局謄錄」 등에서 추가로 사료를 수록하는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寶鑑」에 수록된 내용은 대부분 「實錄」의 기사를 전거로 삼았다. 특히 「宣廟寶鑑」, 「肅廟寶鑑」은 예외 없이 「實錄」의 내용만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셋째, 편찬의 목적이 先王의 업적을 드높이는 한편 先王의 遺訓을 보존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하여 治世를 이룩하는 것에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편찬 목적은 아래 申叔舟와 正祖의 「國朝寶鑑」 서문에 잘 드러나 있으며 상술한 中國 記言體 史書의 서문 내용과도 유사하다. 「國朝寶鑑」의 경우 보다 실용적 면모를 구체적으로 강조한 점이 차이가 있다.

예로부터 국가가 안정된 정치 속에서 오랜 세월을 면면히 이어간 경우는 그 자손들이 祖宗의 遺訓을 잘 지켜서 감히 실추시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반대로 잠시 얻었다가 바로 빼앗겨서 국가를 오래 지속시키지 못한 경우는 先世의 遺訓이 있어도 자손들이 그것을 멸시하여 버리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 列聖들은 이미 가고 없지만 그 精神과 思惟는 이 책에 깃들어 있다. 자손들로 하여금 이 점을 생각하게 해서 祖宗이 政事에 근면하던 모습과 講學하던 모습을 보게 하면 마음을 보존하고 정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祖宗이 求言하던 모습과 納諫하던 모습을 보게 하면 私見을 버리고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 어느 것을 끌어다가 활용해도 그렇게 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世祖代 「國朝寶鑑」 序文)⁴³⁾

열두 임금의 빛나는 공덕과 업적을 끝내 특별히 써서 전하지 않는다면 이 어찌 내가 宗廟를 奉承하는 뜻이겠는가. … 나는 이 책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 읽고는 감탄해 마지않았다. 아, 아름답고도 완벽하도다. 400년을 전수해온 心法과 典章이 모두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학문을 업으로 삼고 덕을 닦는 요체를 하늘을 공경하고 先王을 받드는 실상 및 국고를 낭비하지 않고 백성을 사랑하며

43) 민족문화추진회(1996). 二七-二八.

“自古國家之所以長治久安，曆年綿遠者，以其子孫能守祖宗之遺訓，不敢失墜也。其所以旋得旋失，運祚不長者，以其先世雖有遺訓，而子孫蔑棄之不守也。… 列聖雖已沒世，精神思惟寓於此書。使子孫而念此，觀祖宗之勤政講學，則思所以存心出治之道。觀祖宗之求言納諫，則思所以舍己從人之美。… 引而申之，靡不皆然。”

교육을 흥기시키고 풍속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해서 列聖이 서로 인용한 것 등, 모든 조항을 나열하여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으니, 공업과 덕화가 한없이 빛나서 해와 달처럼 밝고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듯하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지속되어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빛날 일이다. (正祖代 『國朝寶鑑』 序文)⁴⁴⁾

이러한 수용 속에서도 朝鮮의 『國朝寶鑑』은 中國 記言體 史書와는 다른 별개의 체제와 내용을 지니고 있다. 中國 記言體 史書의 경우 類目을 나누고 그 안에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사를 배치하고 있는 반면 『國朝寶鑑』은 『實錄』의 체제를 모방하여 별도로 類目을 나누지 않고 모든 기사를 시간의 순서대로 배치하고 있다. 또한 中國 記言體 史書는 주로 군왕의 통치 철학에 관계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으나 『國朝寶鑑』은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과거에 시행되었던 정치 제도의 절목과 예법의 절차에 대해서 매우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주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서도 詳略의 차이는 있지만 함께 수록하고 있다.⁴⁵⁾ 正祖가 “言動을 併記하여 先祖의 德業까지 알게 하며 간략하면서도 빠뜨리지 않고 미더워서 증거로 삼을 만한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寶鑑』만한 것이 없으니 大聖人의 制作이 정말 훌륭하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언급한 것으로 생각된다.⁴⁶⁾

3. 『國朝寶鑑』의 체제 및 내용 분석⁴⁷⁾

3.1 체제 분석

먼저, 각 『寶鑑』의 체제적 특성을 권수, 본문, 권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나타내면 다음 <표 2>와 같다.

44) 민족문화추진회(1996). 二-三.

“夫以十二朝之有功有德，丕顯丕承，而竟未有以特書昭揭，則是豈予奉承宗廟意哉。… 予敬受而讀之曰，嗚呼，美矣又備矣。四百年心法典章，盡在是矣。凡其典學修德之要，敬天尊祖之實，與夫節用愛民興教正俗之方，列聖相因，萬目畢張，而記載無闕，功化孔彰，炳日月軒天地，將以垂諸無窮，愈久而愈光。”

45) 이와 같은 사항들은 다음 3장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46) 다만 憲宗 12년(1846) 1월에 있었던 經筵 자리에서 檢校直閣 尹定鉉이 “唐의 『貞觀政要』, 宋의 『三朝寶訓』, 明의 『祖訓』은 혹 한 朝를 기술하거나 혹 여러 朝를 기술하였지만 『國朝寶鑑』과 같이 列聖朝의 治法과 政謨를 編年하여 차례대로 찬술한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定鉉曰: “唐之貞觀政要, 宋之三朝寶訓, 皇明之祖訓, 或記一朝, 或記數朝, 未有如國朝寶鑑之列聖朝治法政謨, 編年撰次者也.”](『承政院日記』 憲宗 12년 1월 18일 갑술 17/17 기사)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中國의 記言體 史書가 황실의 공식 史書로서 대대로 편찬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國朝寶鑑』이 대체로 『實錄』의 구성을 모방한 것은 世祖代의 최초 편찬 당시에 宋·明 『寶訓』의 존재는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실제 모습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貞觀政要』는 고려 시기부터 반입되어 있었으나 체제적 참고 대상으로는 고려되지 않은 듯 하다. 본 연구에 참조한 1차 사료에서 中國 記言體 史書의 체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보이지 않았다.

47) 분석 대상으로 世祖代 『國朝寶鑑』, 『宣廟寶鑑』, 『肅廟寶鑑』, 正祖代 『國朝寶鑑』(내용 분석에서는 『英宗朝寶鑑』만 활용)의 4개 『寶鑑』을 활용하였다. 正祖代 이후에 편찬된 『寶鑑』은 正祖代 『國朝寶鑑』의 체제와 내용적 특성을 답습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2> 각 「寶鑑」의 체제적 특징

구 분		世祖代 「國朝寶鑑」	「宣廟寶鑑」	「肅廟寶鑑」	正祖代 「國朝寶鑑」
卷首	구 성	箋, 序, 찬집자 명단	없음	凡例	御製序, 箋, 찬집자 명단, 總敍, 凡例, 目錄
	표현 형식 改行/ 空格	箋·序: 改行(上二字)	.	改行(上二字)	序: 空格 箋: 改行(上二字) 總敍: 改行(上一字) / 空格 凡例: 空格
本文	구 성	권1-7, 文宗 이상 4朝	권1-10, 宣祖 單朝	권1-15, 肅宗 單朝	권1-68, 太祖 이하 19朝
	표현 형식 改行/ 空格	改行(上一字) / 空格 없음	改行(上一字) / 空格 있음	改行(上一字) / 空格 없음	改行 없음 / 空格 있음
	篇名	太祖, 太宗 一 등	없음	없음	太祖朝, 太宗朝 一 등
	인물정보	諡號, 재위연수(小註), 수명(小註)	諡號	諡號, 재위연수(小註), 수명(小註)	諡號, 御諱, 御字, 初諱, 初字, 誕降 날짜·장소, 재위연수, 上王 재위연수, 昇遐 날짜, 수명, 陵號, 陵의 위치(小註)
	재위년 /干支	改行 후 재위년 표시 / 干支 미표시 (바로 이어서 다음 기사 수록)	改行 후 재위년, 干支 순으로 표시 (바로 이어서 다음 기사 수록)	改行 후 재위년, 干支 순으로 표시 (再改行 후 다음 기사 수록)	改行 후 干支, 재위년 순으로 표시 (干支를 墨匡으로 씀)
	월/계절	월, 계절 불규칙 표시	월 표시 / 계절 미표시	월 표시 / 계절 미표시	월 표시 / 1·4·7·10월 계절 표시
	기사 구분	白圈	白圈	白圈	白圈
기 타	.	誤字·疑字에 대한 小註 있음	.	- 「肅宗朝寶鑑」 각 卷次 수 록 범위 변경 - 「宣祖朝寶鑑」 小註 삭제 - 절목은 小註로 수록	
卷末	구 성	없음	없음	箋, 찬집자 명단	跋
	표현 형식	.	.	箋: 改行(上二字)	跋: 空格

<표 2>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수의 경우 世祖代 「國朝寶鑑」은 箋文과 序文, 찬집자 명단이 실려 있으며 「宣廟寶鑑」은 권수 부분이 없다. 「肅廟寶鑑」은 英祖가 내린 凡例만을 수록하고 있다. 正祖代 「國朝寶鑑」의 경우 正祖의 御製序文, 總敍, 목록 등을 추가하여 왕실 史書로서 가장 장중한 구성을 갖추고 있다. 「寶鑑」의 권수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上二字 또는 上一字의 改行을 적용하여 군왕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낸 것에 비해 正祖代 「國朝寶鑑」의 경우 序文, 凡例, 總敍 등은 空格만을 적용하여 읽는 이의 편의성을 높였다.

둘째, 본문의 구성은 世祖代 「國朝寶鑑」, 正祖代 「國朝寶鑑」과 같이 여러 왕대를 함께 수록한 것과 하나의 왕대만을 수록한 「宣廟寶鑑」, 「肅廟寶鑑」의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某朝一」과 같은 편명이 각 권의 첫머리에 나오지만 후자의 경우 편명 없이 바로 재위년을 쓴 것이 차이점이다.

셋째, 본문의 표현 형식은 앞 3개의 『寶鑑』의 경우 모두 改行을 적용하여 열람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그 중 『肅廟寶鑑』은 재위년과 간지를 구별하기 쉽게 배치하는 등 기사의 검색이 다른 두 건보다는 다소 용이하다. 正祖代 『國朝寶鑑』은 인물 정보를 방대하게 수록한 점, 간지를 墨匡으로 표시한 점, 월과 계절의 표시를 상세히 한 점, 改行을 없애고 空格만을 적용한 점, 『宣廟寶鑑』의 교정 小註를 없애고 교정 내용을 바로 본문에 적용한 점, 『肅廟寶鑑』의 절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小註로 수록한 점 등 검색과 열람의 편의성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아울러 『寶鑑』의 표현 형식은 인물 정보의 제시, 白圈을 통한 기사의 구분, 空格을 사용한 존경의 표시 등 대체로 『實錄』의 체제와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권말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 2개의 『寶鑑』에서는 수록하지 않고 있으며 『肅廟寶鑑』에서는 2자를 올리는 改行의 형식으로 箋文을 실었고 正祖代 『國朝寶鑑』에서는 空格의 형식을 취한 跋文만을 담고 있다.

3.2 내용 분석

3.2.1 각 『寶鑑』별 내용 주제 분석⁴⁸⁾

3.2.1.1 世祖代 『國朝寶鑑』

定宗을 제외한 太祖 이하 4대의 기사를 수록한 世祖代 『國朝寶鑑』은 朝鮮에서 최초로 편찬된 『寶鑑』으로서 문체와 내용적 측면에서 이어지는 『寶鑑』에 표준적 안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世祖代 편찬본은 기본적으로 수록 기사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記事體로 요약 제시하고 임금이나 신하의 말이 이어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수록된 각 왕대의 첫 기사는 일종의 總序에 해당되는 내용을 동일하게 배치하였는데 해당 군왕이 재위에 오르는 과정, 군왕으로서 합당한 덕을 갖춘 것을 보여주는 일화 등을 수록하였다. 이는 대체로 『實錄』 總序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한 것이다.

수신, 천변, 인사, 민생, 윤리와 같은 주제들은 각 왕대별로 공통적으로 강조되었다. 수신(59건, 18.61%)과 천변(56건, 17.67%) 주제는 서로 관련되어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늘의 변고나 가뭄, 홍수와 같은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군주가 반성의 교지를 내리거나 減膳 등 검약을 행하는 내용이다. 인사(50건, 15.77%) 주제에서는 공신·대신과 절의가 높은 인물을 예우하고 인재의 등용과 교육에 힘쓰며 환관을 경계할 것 등에 대한 기사를 수록하였고 민생(36건, 11.36%) 주제에서는 재난에 빠진

48) 내용 분석에 활용한 주제 분류는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의 분류 색인을 주로 참고하되 각 『寶鑑』의 내용상 특징에 따라 일부를 변경하여 설정하였다. 하나의 기사가 두 가지 이상의 주제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각 주제의 괄호 안의 건수와 비율(건수를 총 기사수로 나눈 값)은 그러한 중복값이 반영된 것이다. 이 수치들은 각 『寶鑑』이 대략적으로 어떤 주제의 수록기사를 비교적 많이 수록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지표로서 활용한 것이다.

백성을 구휼하고 조세와 요역을 면제하거나 민간의 풍속 교화에 힘써 효도, 금주, 상례, 노인에 대한 존경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실었다. 윤리(33건, 10.41%) 주제에서는 효와 우애, 부자 관계에 대한 기사를 선별하였으며 이 중 효를 중시한 기사가 가장 많다. 그 밖에 종교(17건, 5.36%) 주제의 기사는 불교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며 음양, 도참설, 도가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 내용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측면들은 모두 유교적 군주의 자질로서 공통적으로 중시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군왕 개인의 우수성을 말해주는 일화(13건, 4.10%)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왕대마다 빠지지 않고 수록되었다.

각 왕대별로 특별히 강조된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太祖의 경우에는 개국 공신을 예우하고 그들과 잔치를 자주 열며 친밀한 모습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다. 또한 고려말의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왕조를 교체하게 된 명분을 강조하거나 전 왕조의 왕족인 王氏 세력을 예우하는 기사 등 개국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기사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기사가 「寶鑑」에 수록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太宗은 하늘의 변고나 재난에 따라 반성하고 求言하는 모습과 종친과 외척, 여성 등 왕실 내 인물에 대한 경계와 관리에 관련된 측면을 강조하는 기사가 많다. 또한 明과의 외교 관계를 다룬 기사도 적지 않게 수록되었다.

世宗은 윤리, 그 중에서도 孝를 강조하는 기사가 많은데 특히 즉위 초반 太上王이 된 太宗을 극진히 모시는 내용이 자주 보인다.⁴⁹⁾ 또한 서적의 편찬, 과학기구의 제작 등 문화적 측면과 호포법·조용조법·호포법 등 재정 정책, 지방 수령·중앙 정부조직 등 행정 정책에 관련된 기사가 많고 가혹한 벌을 금지하고 옥사에 대한 신중함을 강조하는 등 사법 관련 기사와 북방 이민족, 남방 왜의 토벌 등 군사 관련 기사가 다른 군왕에 비하여 특별히 강조되었다. 또한 太宗과 마찬가지로 明에 대한 事大의 기사도 일정 부분 수록되었다.

文宗은 수록 기사의 수가 적어 다른 군왕과 비교하여 살펴기는 어려우나 대체로 인재의 등용에 힘쓰는 모습, 文宗의 성리학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강조하는 기사가 많이 수록되었다.

3.2.1.2 「宣廟寶鑑」

「宣廟寶鑑」 수록 내용의 주제적 특징을 요약해서 표현하면 전반부의 인사·붕당과 후반부의 壬辰倭亂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만큼 이와 관련한 주제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먼저 군사(184건, 44.66%) 주제로 분류되는 기사들은 대부분 壬辰倭亂과 관련되는 기사들로서 전쟁이 발발한 宣祖 25년과 26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록되었다. 특히 의병의 활약상에 관하여 적지 않은 기사를 뽑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⁵⁰⁾ 그 밖에 북방 이민족과의 전투 및 군사제도 관련

49) 世宗의 「寶鑑」내에서 太宗은 世宗 4년(1422)에 薨하기 전까지 대부분의 기사에서 등장하며 어린 世宗을 대신하여 실질적인 정사를 이끄는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50) 의병과 관련된 기사는 총 13건으로 宣祖 25년에 10건, 26년에 2건, 27년에 1건이다. 의병의 활약상을 많은 지면을

기사도 일부 수록되었다. 또한 宣祖 25년의 전쟁 발발 전후로 中國 및 倭와의 외교 상황과 관련한 기사가 많이 채택되었다. 中國과 관련해서는 明 군대의 활약상과 원병을 보내준 은혜, 丁應泰의 誣告 사건에 대한 해명 관련 기사가 대부분이고 倭와 관련해서는 전쟁을 전후로 한 상호간의 사신 파견과 외교 상황 관련 기사가 많다.

壬辰倭亂과 관련된 군사와 대외 주제의 내용은 전체 기사 중 각각 절반과 20%정도의 비율이고 특히 宣祖 25년 이후로 기간을 한정하면 군사 주제의 경우 거의 수록 기사 전체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⁵¹⁾ 이를 감안하면 『宣廟寶鑑』의 후반부는 온전히 壬辰倭亂 관계 기사만을 수록하였다고 하여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인사(116건, 28.16%) 주제에서는 명망 있는 신하를 초빙·예우하여 의견을 듣는 내용이 많이 수록되었다. 가장 높은 비율로 관련 기사가 수록된 인물은 李珥와 成渾, 李滉 등으로 특히 그들이 올린 상소문은 양적 측면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보이는 것은 李珥다. 李珥가 등장하는 기사는 총 63건으로 전체 기사 중 15% 가량이며 그의 卒年인 宣祖 17년 이전으로 한정하면 175건의 기사 중 60건(34.28%)이 수록되었다. 李珥는 특히 宣祖 6-8년, 15년, 16년에서 그 해 수록 기사 전체의 절반 이상에 등장한다.⁵²⁾ 宣祖 6년과 7년에는 정치하는 방법에 대한 간언과 임금과의 문답을 수록한 것이 많고 8년에는 仁順王后 장례의 예법 논의, 成渾의 등용, 『聖學輯要』의 進上, 經筵에서의 학문 등과 관련한 기사가 복합적으로 제시되었다. 宣祖 15년에는 李珥가 『學校模範』, 『人心道心說』, 『善惡幾圖』, 『金時習傳』 등을 지어 올린 것, 經筵에서의 임금과의 문답 등과 함께 9월에 지어 올린 4가지 時弊에 대한 상소문을 실은 기사가 수록되었다. 宣祖 16년의 경우 5월 이전에는 시무에 대한 李珥의 상소문이 요약없이 수록되었고 5월 이후에는 李珥에 대한 탄핵 관련 기사가 다수 채택되었다. 이는 당대에 발생하기 시작한 東·西人 사이의 다툼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⁵³⁾

李珥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成渾이다. 成渾이 등장하는 기사의 수는 총 26건으로 전체 기사의 6.31%를 차지한다. 成渾과 관련한 기사는 宣祖 14년과 16년에 많이 채택되었다.⁵⁴⁾ 宣祖 14년에는 成渾이 올린 당시 時務에 대한 상소문이 산삭없이 수록되었으며 16년의 기사는

할애하여 수록하였으며 특히 남원성 전투의 전사자 명단을 상세히 실은 점이 주목된다.(권9-선조30년-4, 수록 기사 표시는 ‘권차-재위년-기사 순서’순으로 표기, 이하 동일) 편찬자인 李端夏는 ‘名賢終始’, ‘忠臣節義’, ‘討倭寇事實’의 3가지에 대하여 상세히 수록하였다고 언급하였다.(正祖代 『國朝寶鑑』 ‘國朝寶鑑總敘’: 恭惟宣廟朝崇極而圯, 中興於大亂之餘, 國朝多事未有若此時者. 至於名賢終始可見禮遇非常之聖德, 忠臣節義可見培養有素之聖化, 討倭寇事實則尤可見聖朝功烈之盛, 而非可爲懲愆之方. 故於三者載錄頗詳.)

51) 宣祖 25년 이후 기사 195건 중 군사 주제로 분류되는 기사는 총 168건(86.15%)이다.

52) 宣祖 6년 15건 중 8건(53.33%), 宣祖 7년 8건 중 7건(87.50%), 宣祖 8년 26건 중 12건(46.15%), 宣祖 15년 4건 중 4건(100%), 宣祖 16년 37건 중 23건(62.16%).

53) 宣祖 16년에 발생한 東·西人간의 대립을 癸未三竄이라고 한다. 東人 계열의 朴謹元·宋應漑·許筠 등이 李珥를 몰아내려다 모두 유배된 사건이다.

54) 宣祖 14년 수록 기사 8건 중 5건(62.50%), 宣祖 16년 수록 기사 37건 중 7건(18.92%).

상술한 봉당간 다툼 속에서 西人이었던 成渾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에 해당된다. 그 외 대부분의 기사는 그의 높은 명성으로 인하여 조정의 신하들이 임금에게 그를 천거하여 부르지만 끝내 出仕는 거절하며 임금이 가난한 그를 위하여 쌀과 곡식을 내리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李滉의 경우 긴 길이의 상소문, 임금과의 문답 등 그와 관련된 기사가 宣祖 1년에 많이 수록되었다.⁵⁵⁾ 그 밖에는 奇大升이 宣祖 즉위 초반에 정치와 군왕의 도리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이 다수 실렸으며 河洛이 올린 成渾과 李珥를 옹호하는 상소문도 적지 않은 분량으로 수록되었다.

상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宣廟寶鑑」 전반부는 신하, 그중에서도 西人으로 분류되는 인물의 상소문, 임금과의 문답, 그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실은 것이 대부분이며 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인 宣祖의 비중은 크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부 신하의 상소문 등이 적지 않은 분량으로 실리기는 했지만 어디까지나 군왕의 말과 정치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던 世祖代 「國朝寶鑑」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결과는 두 「寶鑑」이 편찬되었던 世祖代와 仁祖-肅宗代 사이의 정치권력 구도의 변화가 초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宣廟寶鑑」에서 經筵 관련 기사의 수가 증가한 것도 그러한 신하 주도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⁶⁾

수록 기사의 주제적 측면 외에 「宣廟寶鑑」에서 보이는 주목할 만한 특징은 文體의 변화이다. 壬辰倭亂이 발발한 宣祖 25년 이전에는 일반적인 「寶鑑」 문헌의 특징인 사건은 짧게, 말은 길게 실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그 이후에는 戰況의 경과를 記事體의 방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속하여 수록하고 있다.⁵⁷⁾

상술한 내용을 요약하면 「宣廟寶鑑」은 수록 기사의 주제와 문체적 측면에서 여타의 다른 군왕의 「寶鑑」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이질적 성격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유교적 대학자의 출현, 봉당의 형성, 壬辰倭亂의 발발과 같은 宣祖代의 굵직한 대내외적 상황을 그 원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1.3 「肅廟寶鑑」

「肅廟寶鑑」에서는 수록 기사의 주제와 내용의 주제면에 있어 다시 군왕중심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다. 「肅廟寶鑑」에서는 군왕인 肅宗의 教旨, 綸音, 備忘記, 신하와의 문답, 御製詩와 각종의 문장 등을 요약 없이 대폭적으로 수록하였다. 특히 연초에 각 도의 지방관들에게 내리는 의례적인 下教는 내용상 대동소이함에도 빠짐없이 수록되었다. 상대적으로 신하의 발언이 많이 수록된 것은 예법과 관련한 기사에 한정된다.

55) 宣祖 1년 수록 기사 15건 중 8건(53.33%).

56) 「宣廟寶鑑」에서 신하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점, 經筵의 확대, 여러 신하의 장문의 상소문을 장황하게 실은 사실 등은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정재훈(2002), 53-56.)

57) 의병과 관련된 기사에서는 경우에 따라 그 활약상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 극적인 문체로 서술하고 있다. 「宣廟寶鑑」의 문체에 대하여 正祖는 “作家의 문자와 비슷하다.”라고 하였고 徐命膺은 “史書에 비교하면 「通鑑」과 비슷하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日省錄」, 正祖 5년 신축 7월 26일, 予曰: “宣廟寶鑑文體, 有似作家文字矣.” 命膺曰: “比之史記, 則國朝寶鑑如史略, 宣廟寶鑑如通鑑, 肅廟寶鑑如綱鑑.”)

내용의 주제적 측면에서도 『宣廟寶鑑』과는 큰 차이점이 있다. 가장 빈번히 보이는 주제의식은 민생(177건, 23.41%), 인사(156건, 20.63%), 천변(142건, 18.78%), 군사(87건, 11.51%), 행정(82건, 10.85%), 사법(77건, 10.19%), 수신(77건, 10.19%)과 같은 항목이다. 즉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백성을 구출하고 세금을 감하며 천둥, 흰 무지개 등 재이 현상이 보일 때는 감선하고 반성하며 죄수들을 사면하는 한편 대외에 求言의 하교를 내리는 모습, 농사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인재의 선발과 교육, 관리의 임면과 관료 집단 내 기강을 엄히 신칙하는 한편 致仕를 만류하고 정사에 참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명망 있는 대신을 예우하는 모습⁵⁸⁾, 또한 倭亂과 胡亂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를 당하여 군사 제도의 정비에 힘쓰는 모습 등이 채택되었다. 행정 주제에서는 특히 지방 수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下教가 다수 수록되었으며 經筵을 열어 학문에 힘쓰고 정사를 논의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⁵⁹⁾ 이러한 내용들은 유교적 군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덕목을 표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世祖代 『國朝寶鑑』의 주제 의식으로 다시 회귀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世祖代 『國朝寶鑑』에 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과 제도를 통하여 정책들을 시행하여 나갔는지를 훨씬 상세히 수록한 점이 『肅廟寶鑑』이 가지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⁶⁰⁾ 이는 근거 사료인 『實錄』의 내용 변화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적 측면에서 『肅廟寶鑑』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예법 관련 기사의 수와 양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125건, 16.53%) 예법과 관련한 기사는 즉위 초기 仁宣王后, 仁敬王后 장례의 복식 규정, 太祖의 尊號를 올리는 절차, 재위 중후반기의 端宗 복위를 위한 예식 절차 등 『肅廟寶鑑』 전체를 걸쳐 지속적으로 수록되었으며 다른 어떤 주제보다도 상세한 내용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肅廟寶鑑』내에 등장하는 문헌 역시 『五禮儀』, 『禮記』, 『儀禮』, 『家禮』, 『通典』, 『大明會典』과 같은 예법과 관련된 종류가 대다수이다.⁶¹⁾ 이는 성리학의 본격적 보급으로 예법이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수차례 換局이 일어나는 등 봉당간의 대립이 절정에 달했던 당대의 정치상황을 보여주는 기사는 거의 수록되지 않았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봉당 간의 화합을 강조하는 肅宗의 언급이 다수 채택되었다. 이는 『肅廟寶鑑』 범례의 ‘禮說, 斯文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지 말라’는 英祖의 명을 충실히 따르는 동시에 편찬 당시 英祖가 표방한 당평의식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58) 이러한 예우의 대상은 宋時烈, 權尙夏, 尹拯, 朴世采, 尹趾完, 南九萬 등으로 老·少論의 인물이 비교적 균형 있게 채택되었다. 다만 가장 빈번히 등장하고 많은 분량이 수록된 것은 宋時烈과 관련한 기사이다.

59) 經筵의 교재는 『詩經』 등 경서 이외에 『聖學輯要』(4차례), 『心經』(3차례), 『大學衍義』(2차례) 등이 보인다.

60) 全羅道 巡撫使 李世華에게 내린 應行節目(권1-숙종1-11), 五家作統의 시행을 위해 備邊司가 올린 別單(권1-숙종1-26), 인구조사를 위해 兵曹가 올린 10개 규정(권2-숙종2-14), 황해도 嶺隘의 방어 및 寧邊城의 곡식 비축에 관한 事目(권3-숙종6-1), 지방의 암행어사 순시에 관한 추가 절목(권4-숙종7-4), 군제 변통을 위한 추가 절목(권5-숙종8-17), 神懿, 元敬 두 왕후의 위판 가운데 太字를 삭제하기 위한 儀註(권6-숙종9-47), 王世子·中殿 등이 展謁禮를 행하기 위한 의례 절차(권10-숙종22-11, 권10-숙종22-12), 愼妃의 사당에 대한 절목(권11-숙종25-10), 양역 변통을 위한 절목(권14-숙종37-10), 王世子의 대리청정을 위한 절목(권15-숙종43-10), 肅宗이 耆老所를 들어가는 것을 경하하는 잔치의 절목(권15-숙종45-6) 등이 상세히 수록되었다.

61) 『五禮儀』 27차례, 『禮記』 9차례, 『儀禮』 6차례, 『家禮』 4차례, 『通典』 5차례, 『大明會典』 3차례 등장.

그 외에 肅宗 31년에 있었던 禪位 과정 당시에 王世子(후의 景宗)가 올린 상소문이 다수 채택되었으며 훗날의 英祖가 되는 延祔君과 관련한 기사도 일부 수록되었다. 윤리적 측면에서는 다른 「寶鑑」과 마찬가지로 효행, 절의, 경로 등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로 채택되었는데 그러한 윤리 의식의 실천을 위하여 살인 등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용서해 주거나 오히려 표창까지 해주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도덕 사상을 사법보다 우선시 했던 당대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⁶²⁾ 肅宗 개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로는 상술한 禪位 과정의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웠던 화병과 관련한 기사가 다수 수록된 것과 關羽의 사당인 關王廟에 대한 致祭를 명하는 기사가 빈번히 채택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3.2.1.4 正祖代 「國朝寶鑑」, 「英宗朝寶鑑」

「英宗朝寶鑑」은 앞선 세 「寶鑑」의 장점을 취사선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먼저 발언의 주체와 내용적 측면에서는 「肅廟寶鑑」과 같이 군왕중심의 기초를 이어가고 있다. 「肅廟寶鑑」은 예법 관련 기사의 경우 신하의 발언을 장문으로 수록하였으나 「英宗朝寶鑑」에서는 그마저도 상당 부분 축소되었다. 다만 군왕의 발언이라고 할지라도 「肅廟寶鑑」과 같이 전체의 내용을 수록하지는 않았으며 상당히 압축된 형태로 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연초에 각 도의 지방관들에게 내린 下敎에 대한 기사는 「肅廟寶鑑」의 전례에 따라 빠짐없이 수록하였으나 下敎의 내용을 全文으로 실지 않고 短文의 형식으로만 수록하고 있다.

개별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경우 世祖代 「國朝寶鑑」과 같이 여러 기사의 내용을 묶어 요약하여 서술한 경우가 많다. 英祖 4년의 李麟佐의 亂을 수록한 부분에서는 「宣廟寶鑑」 후반의 壬辰倭亂 부분과 같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記事體의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肅廟寶鑑」과 같이 상세한 절목을 수록하는 방식은 계속하여 이어 나갔다.⁶³⁾ 그 외에 주목할 만한 군왕의 언급이 아닌 경우 개별 업적의 기술은 短文으로 수록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내용 및 편집상의 특징은 앞선 3개 「寶鑑」의 장점을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내용의 간결성과 열람의 편의성을 도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록 기사의 주제적 측면에서는 유교 군주의 덕목을 중시하는 내용을 수록하면서도 당대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사들도 다수 실고 있다. 민생(220건, 27.36%), 인사(175건, 21.77%), 사법(96건, 11.94%)과 같은 군주의 기본 덕목에 해당하는 주제를 강조한 기사가 많이 수록되었고 「肅廟寶鑑」과 같이 예법(181건, 22.51%)과 관련된 기사 역시 다수 채택하였다.⁶⁴⁾ 재난, 재이(70건, 8.71%)와 관련된

62)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오히려 표창을 한 사례는 경상도 私婢 春玉이 남편을 위하여 복수한 내용을 수록한 기사이다.(권8-숙종13-4) 이 사건은 당초에 사형으로 결정되었으나 대신과 왕의 논의를 거쳐 사형을 취소하고 그 義烈을 표창하기 위해 旌閭門까지 세워주었다.

63) 양역 제도에 대한 변동 절목(권64-영조26-11), 각 도에 御史를 보내는 절목(권61-영조11-2. 「實錄」 미수록), 王世孫의 入學禮 절목(권65-영조37-4), 長湍 지역의 방어영을 坡州로 옮길 때의 절목(권66-영조40-19. 「實錄」 미수록), 王世孫이 代理聽政하는 절목(권68-영조51-13), 왕이 親耕하는 절목(권61-영조15-3), 왕비가 獻種할 때의 儀註(권66-영조43-4), 왕비가 親蠶하는 儀註(권66-영조43-5), 왕비가 受廟하는 儀註(권66-영조43-7), 왕이 친히 刈穀을 받는 儀註(권67-영조45-7), 왕비가 藏種하는 儀註(권67-영조45-8)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기사의 수는 다소 줄어들었다. 윤리(91건, 11.32%) 주제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효도와 경로 등의 관념이 강조되고 있다.

경연(72건, 8.96%)과 관련된 기사도 많이 수록되었는데 강독 교재로서 특히 강조된 것은 「小學」으로, 전체 기사에서 모두 15차례나 등장하고 있다. 英祖는 서울과 지방의 학교에서 「小學」을 중시하여 가르칠 것을 명하고⁶⁵⁾ 世宗이 「資治通鑑」의 訓義를 지은 것을 본받아 「小學訓義」를 편찬할 정도로⁶⁶⁾ 「小學」을 대단히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

다음으로 정치적 사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록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주로 老論 세력의 정치적 입지 강화와 군왕 英祖의 정통성 확립과 관련한 사건들이다. 壬寅獄事의 주범들인 陸虎龍, 金一鏡에 대한 즉위 초의 친국, 英祖 4년의 李麟佐의 亂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었으며 역적과 충신에 대한 사후 처벌과 포상의 내용을 담은 기사들이 다수 수록되었다.⁶⁷⁾

훗날의 正祖가 되는 王世孫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가 많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71건, 8.83%) 經筵에서의 英祖와의 문답 등 王世孫의 영특한 자질이 드러나는 기사와 英祖와의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기사가 다수 채택되었다. 또한 英祖 재위 후반기의 王世孫이 代理聽政을 맡게 되는 과정과 당시 王世孫이 올렸던 사양의 상소 역시 상세히 수록되었다. 이와 같은 기사들의 수록은 계승적 측면에서 正祖 왕권의 정통성을 보다 공고이하는 목적을 띄고 있었을 것이다.

箕子 및 三國·高麗의 인물에 대한 致祭 등 우리 역사를 중시하는 내용의 기사도 다수 수록되었다.(15건, 1.87%) 이는 明 멸망 후 더 이상 事大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자존 의식을 고취시켰던 당대의 사상적 태도를 반영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64건, 7.96%) 주제에서는 「政經」, 「養正圖解」, 「爲將必覽」, 「續兵將圖說」, 「救荒撮要」, 「御製警世問答」 등 英祖代에 각종 서적을 간행한 사실이 다수 수록되었다. 검약을 중시하는 생활태도, 기우제를 지낼 때 더욱 공경에 힘쓰기 위하여 輦에서 내려 몸소 걸어간 일화, 벌레를 태워 죽이지 말라는 하교 등 英祖 개인의 품성을 보여주는 기사 역시 적지 않게 수록되었다.(23건, 2.86%)

3.2.2 수록기사의 典據

3.2.2.1 世祖代 「國朝寶鑑」

世祖代 「國朝寶鑑」에 수록된 대부분의 기사는 「太祖實錄」, 「太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에 그 전거가 보이며 「太宗實錄」 일부 기사에서 「定宗實錄」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實錄」에서

64) 「肅廟寶鑑」과 마찬가지로 「英宗朝寶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서 역시 「五禮儀」(20차례), 「大明集禮」(4차례) 등 예법과 관련한 서적이다. 다만 그 종류와 빈도수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65) 권63-영조23-14.

66) 권63-영조20-3.

67) 이와 같은 내용들은 군사(87건, 10.82%) 주제로 분류하였다.

정확한 전거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총 3건이다.⁶⁸⁾ 世祖代 「國朝寶鑑」에는 수록 연도가 해당 「實錄」 전거의 일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있다. 특히 太祖代 기사에서 빈번히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實錄」 典據와 시기가 다른 世祖代 「國朝寶鑑」 수록 기사

「寶鑑」 기사	「實錄」 典據	내용	비고
권1-태조1-6	太祖實錄 13권, 7-2-29 병오 1번	金士衡, 南閻 등과 平州 온천에 幸行함	
	太祖實錄 13권, 7-3-1 무신 1번		
권1-태조1-7	太祖實錄 6권, 3-11-4 경자 2번	卞仲良의 말과 太祖의 諄문	
	太祖實錄 6권, 3-11-6 임인 1번	卞仲良 등을 유배시킴	
권1-태조1-8	太祖實錄 14권, 7-7-11 갑신 1번	太祖가 趙浚을 옥보인 사람을 벌함	
권1-태조1-13	太祖實錄 12권, 6-8-14 계사 5번	洪範을 써서 올리게 함	일부 내용
권1-태조5-1	太宗實錄 17권, 9-2-14 정해 1번	權近의 卒記. 주요 전거	
권1-태조6-5	太祖實錄 3권, 2-6-16 경인 1번	暹羅國과의 交隣	일부 내용
	太祖實錄 8권, 4-12-14 계묘 2번	내용의 주요 전거	
권2-태종2-5	太宗實錄 5권, 3-3-10 정해 1번	金科에게 무시로 소대하게 하고 權近과 문답함	
	太宗實錄 6권, 3-9-22 정유 1번	상의 총명함,金科와의 대화	
권7-문종1-1	文宗實錄 13권, 2-5-14 병오 2번	書法에 능통함. 經筵官과의 問答	일부 내용

<표 3>과 같이 「實錄」의 전거와 시기상 차이가 있는 「寶鑑」의 기사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권1의 太祖 1년 6·7·8·13번째 기사, 太祖 6년 5번째 기사, 권3의 太宗 2년 5번째 기사와 같이 실제 사건을 서술하면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⁶⁹⁾ 이는 대체로 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을 인접하여 수록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일치하지 않음에도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끌어와 배치한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권1 太祖 5년 1번째 기사와 같이 「實錄」상의 수록 시기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이 「寶鑑」에서 서술된 사건의 실제 시기와는 일치하거나 交隣의 전반적 상황을 기술한 太祖 6년 5번째 기사, 文宗의 성품을 기술한 文宗 1년 1번째 기사와 같이 실제 사건이 아닌 내용을 서술한 경우이다. 이를 통해 해당 「寶鑑」 기사를 수록하는 과정에서 당해년이 아닌 다른 연도의 「實錄」 기사에도 관련 내용이 있을 경우 함께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實錄」의 전거와 「寶鑑」 수록 기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된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太宗은 「實錄」에는 太祖의 5번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으나⁷⁰⁾ 「寶鑑」에는 셋째 아들로 기술된 것⁷¹⁾, 「實錄」에는 “이 분(太宗)에게는 하늘을 덮을 英氣가 있다”라고 말한 사람이 南閻으로

68) 권3-태종15-2, 권7-문종1-2, 권7-문종1-3의 3건이다. 권3-태종15-2의 경우 기사의 내용은 전거가 확인되나 伊彦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으며 뒤의 文宗朝의 2건의 경우 「端宗實錄」, 「世祖實錄」 등에서 수록 기사의 내용이 일부 확인된다.

69) 권1-태조1-7, 권1-태조1-8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에서도 언급되었다.(정재훈(2002), 45.)

70) 「太宗實錄」 1권, 충서.
“太宗 (중략) 太祖第五子.”

되어 있으나⁷²⁾ 『寶鑑』에는 河崙으로 되어 있는 점⁷³⁾, 太宗 11년에 權近이 지은 李穡의 行狀 내용이 中國으로 흘러들어가 문제가 되었을 때 『實錄』에는 河崙이 “公[李穡]을 꺼려한 자는 趙浚과 鄭道傳을 가리킨 말”이라고 하였으나⁷⁴⁾, 『寶鑑』의 기사에는 趙浚 대신 南閻으로 되어 있는 점⁷⁵⁾, 『實錄』에는 文宗이 ‘文詞와, 書藝, 曆算, 聲音, 百家의 여러 가지 기예도 또한 그 오묘함이 극에 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으나⁷⁶⁾ 『寶鑑』에는 ‘雜藝에는 뜻을 두지 않았다.’라고 기술된 점⁷⁷⁾ 등이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太宗의 왕위 정당성을 강조하고 역적으로 몰려 죽은 南閻 대신 河崙과 趙浚을 치켜세우거나 文宗이 유교적 군주임을 강조하는 등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변동한 것으로 보인다.⁷⁸⁾

3.2.2.2 「宣廟寶鑑」, 「肅廟寶鑑」

「宣廟寶鑑」과 「肅廟寶鑑」은 각각 「宣祖修正實錄」과 「肅宗實錄」·「肅宗實錄補闕正誤」에서 내용을 취하였다. 「實錄」의 전거와 내용이 상이하거나 전거가 파악되지 않는 수록 기사는 없다.

3.2.2.3 正祖代 「國朝寶鑑」, 「英宗朝寶鑑」

「英宗朝寶鑑」에 수록된 대부분의 기사는 「英宗實錄」에서 온 것이다. 사실이 요약되어 제시된 경우 「實錄」의 ‘英宗大王 行狀’을 취한 경우가 많다. 「實錄」에서 명확한 전거가 파악되지 않는 기사는 총 58건이다.⁷⁹⁾ 이를 통해 다른 「寶鑑」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수의 기사를 「實錄」 외의

71) 권2-태종즉위년-1.

“上太祖第三子.”

72) 『太宗實錄』 1권, 총서.

“南閻每見太宗, 必謂人曰: “斯人蓋天英氣.””

73) 권2-태종즉위년-1.

“河崙素好相人, 傾心附之, 每見必謂人曰: “斯人蓋天英氣.””

74) 『太宗實錄』 21권, 태종 11년 6월 29일 무오 1번째 기사.

“(河)崙曰: “臣之指言用事者, 蓋指趙浚鄭道傳而言之也.””

75) 권3-태종11-4.

“(河)崙凡四上書自辨曰: “所謂忌公者, 指南閻鄭道傳而言之也.””

76) 『文宗實錄』 13권, 문종 2년 5월 14일 병오 2번째 기사.

“文詞草隸曆算聲韻百家衆技, 亦莫不各極其妙.”

77) 권7-문종1-1.

“然不以雜藝留意也.”

78) 정재훈(2002)은 일부 世祖代 「國朝寶鑑」 기사의 전거를 밝히고 있는데 오류로 확인 되는 경우가 3건이 있어 여기에 밝혀둔다. 『寶鑑』의 권1-태조1-2, 권1-태조3-3, 권2-태종3-4의 기사에 대하여 정재훈은 그 전거를 각각 전거 없음, 『太祖實錄』 6권 3년 6월 1일 5번째 기사, 『太宗實錄』 5권 3년 6월 4일 경술 1번째 기사로 파악하였으나 본 연구의 조사 결과 해당 기사의 전거는 『太祖實錄』 1권 1년 7월 20일 기해 3번째 기사, 『太祖實錄』 6권, 3년 11월 19일 을묘 2번째 기사, 『太宗實錄』 5권 3년 5월 5일 신사 1번째 기사로 확인된다.

79) 전체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기사는 다음의 46건이다. 권57-영조1-18, 권57-영조1-19, 권57-영조1-20, 권57-영조

자료에서도 뽑아 수록했음을 알 수 있다. 「肅廟寶鑑」을 纂次할 때의 경우를 예로 들어 「實錄」과 「承政院日記」 외에 「備局謄錄」 중에서도 「寶鑑」에 수록할 내용을 뽑으라는 正祖의 명을 고려해 보면⁸⁰⁾ 「實錄」에서 전거가 보이지 않는 기사들은 「承政院日記」나 「備局謄錄」에서 내용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 외에 다른 연도의 「實錄」 내용이 수록되거나 「實錄」 전거와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4.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의 刊行 분석 및 失傳 내용의 복원

燕山君代의 「續國朝寶鑑」 편찬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간략하게 지적된 바 있다.⁸¹⁾ 본 장에서는 관련된 「燕山君日記」와 「實錄」의 기사를 검토하여 그 간행본의 존재 여부를 밝히는 한편 여러 문헌에 산재해 있는 「續國朝寶鑑」 인용 기사를 모아 실전된 내용의 일부를 복원하고 분석하였다.

燕山君 4년(1498)에 洪貴達이 世祖 이하 3대의 「國朝寶鑑」을 편찬하도록 주청하여 허락을 얻었다.⁸²⁾ 하지만 「實錄」이 완성된 후에 시행토록 전교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듬해 洪貴達이 「實錄」의 간인 후 實錄廳에서 쓰고 남은 종이를 사용하여 「國朝寶鑑」을 속편할 것을 재차 주청하였고 왕이 이를 운허하였다.⁸³⁾ 한때 減省으로 인하여 寶鑑廳이 혁파되고 왕이 「國朝寶鑑」이 필요치

1-22, 권58-영조3-20, 권59-영조5-10, 권60-영조7-4, 권60-영조7-6, 권60-영조8-21, 권60-영조9-12, 권60-영조9-17, 권61-영조11-2, 권61-영조11-4, 권61-영조11-10, 권61-영조12-2, 권61-영조12-12, 권61-영조12-15, 권61-영조13-14, 권61-영조14-2, 권61-영조15-2, 권62-영조16-5, 권62-영조17-6, 권62-영조17-7, 권63-영조18-9, 권63-영조20-7, 권63-영조22-4, 권63-영조24-5, 권64-영조27-7, 권64-영조34-3, 권64-영조34-9, 권64-영조35-7, 권64-영조35-13, 권64-영조35-14, 권65-영조37-3, 권65-영조37-10, 권65-영조38-5, 권65-영조38-8, 권65-영조39-6, 권66-영조40-8, 권67-영조44-1, 권67-영조44-2, 권67-영조46-2, 권67-영조48-2, 권68-영조51-1, 권68-영조51-3, 권68-영조51-8.

일부 내용만이 파악되지 않은 기사는 다음의 12건이다. 권58-영조3-30, 권60-영조7-7, 권60-영조8-2, 권61-영조15-8, 권61-영조16-20, 권63-영조18-2, 권63-영조22-5, 권65-영조37-1, 권65-영조39-5, 권67-영조45-7, 권67-영조45-8, 권67-영조45-9.

80) 「日省錄」, 正祖 5년 신축(1781) 7월 17일(정사).

“昨於備忘已諭之。而肅廟寶鑑纂次時。備局謄錄中節目之可考可據者。亦多編輯矣。先大王五十年臨御。政令教化之不入於實錄日記者多。故今番纂輯之日。欲爲一體編錄。”

한편 이렇게 「등록」에서 뽑은 내용과 함께 각도에서 올라온 狀啓와 文報의 내용을 모아 각각 명목을 세워 재록하여 「備局故事」로 이름한 문헌을 편찬하게 하였으나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日省錄」. 위 기사. 而第本司各年條謄錄. 浩繁無統. 難以考據. 且抄出之除. 取捨存刪. 不可屬之於郎吏之手. 故欲使諸堂齊會抄出. 以成一通冊子. 名之曰備局故事. 庸作本司掌故之資矣. 然則使諸堂逐日會銜. 甲辰以後謄錄之可作後考者. 一并抄出付籤. 而其外各道狀報. 亦令一體抄出. 如軍政鞞鞞等事. 各立名目. 以爲謄錄. 則可無混淆雜之患矣.)

81) 조계영(2006), 59-60. ; 정재훈(2002), 39.

82) 「燕山君日記」 29권, 연산 4년 2월 20일 병술 1번째 기사.

“同知事洪貴達曰：“祖宗以來, 嘉言善政, 殿下不可不知, 世祖朝命撰國朝寶鑑, 備載列聖行事之迹. 世祖以下三朝之事, 時未撰次, 請續輯之.” 王曰：“可.””

83) 「燕山君日記」 32권, 연산 5년 2월 22일 임자 1번째 기사.

않음을 전교하여 찬집이 중단되기도 하였으나⁸⁴⁾ 그 다음해 2월에 安琛이 다시 한 번 편찬할 것을 주청하여 왕이 윤허하였다.⁸⁵⁾ 9월에 이르러 洪貴達이 『續國朝寶鑑』을 찬술하여 올렸다.⁸⁶⁾

이 燕山君代 洪貴達 進上 『續國朝寶鑑』의 실제 간행은 燕山君 8년(1502) 8월에 成俊이 “近者에 간행한 『國朝寶鑑』은 다만 4권뿐이므로 하루 이틀이면 두루 볼 수 있다.”⁸⁷⁾라고 언급한 것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관건이 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4권이 글자 그대로 4권인지 아니면 4冊인지의 문제인데, 양자 중 어느 쪽이든 世祖代의 7卷 3冊 『國朝寶鑑』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4권이 4冊을 의미하다면 기존의 世祖代 『國朝寶鑑』에 世祖 이하 3조의 일을 1冊으로 추가하여 총 4책으로 만들었거나 혹은 3조의 일만을 따로 편찬 한 것이 4책일 수도 있다. 4권이 4卷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世祖代의 7卷과는 별도로 燕山君代 『續國朝寶鑑』만을 가리켜 4卷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⁸⁸⁾ 또한 50여년 전에 世祖代 『國朝寶鑑』이 편찬된 일을 가리켜 ‘近者’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을 고려해 보면 이와 같은 成俊의 언급은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의 간행을 반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續國朝寶鑑』의 존재를 암시하는 또 다른 증거로서 후대에 지속적으로 『國朝寶鑑』의 서명을 인용하여 成宗代, 世祖代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점, 中宗이 成宗朝의 일이 『寶鑑』에 실려있다고 언급한 점⁸⁹⁾, 中宗代에 『國朝寶鑑』에 祖宗朝의 일이 모두 실려 있음을 언급하고 廢朝(燕山君)의 일 중에서 경계될 만한 것을 뽑자는 中宗의 의견으로 편찬이 진행되다 중단된 일이 있었을 뿐⁹⁰⁾ 世祖 이후 3대의 『寶鑑』을 편찬하자는 주청이 없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모두 『續國朝寶鑑』이 간행되어 왕실에 그 印本이 보관 및 열람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⁹¹⁾

“洪貴達啓: “國朝寶鑑皆載先王之嘉言善政也, 而文宗以上已撰, 而成宗以上時未撰集, 故臣前以此意啓之, 傳曰 ‘實錄事畢後爲之.’ 今則實錄已畢, 請令弘文館, 實錄廳, 用餘紙出草, 以續國朝寶鑑何如?” 傳曰: “可.””

84) 『燕山君日記』 35권, 연산 5년 10월 30일 병진 5번째 기사.
“議政府啓: “今因減省, 權罷寶鑑廳. 廳員皆有衙門, 令各本司供饋, 則無妨於減省, 而寶鑑可撰集矣.” 傳曰: “古有無寶鑑之時. 既已停罷, 不必爲之.””

85) 『燕山君日記』 36권, 연산 6년 2월 5일 기축 1번째 기사.
“大司憲安琛曰: “國朝寶鑑本朝嘉言善政, 無不備載. 自太祖至于文宗朝, 既已撰集, 今於君臣明鑑撰集時, 世祖朝以後寶鑑, 請并撰.” 王曰: “可.””

86) 『燕山君日記』 39권, 연산 6년 9월 27일 무인 2번째 기사.
“知中樞府事洪貴達, 兵曹參判權健等撰續國朝寶鑑以進.”

87) 『燕山君日記』 45권, 연산 8년 8월 6일 을사 1번째 기사.
“俊啓: “... 近者所刊國朝寶鑑只四卷, 一二日可能遍閱. 一經聖覽, 則可知祖宗爲民停役之意. 我太宗大王未嘗爲民怨事, 世宗大王嘗值大旱, 親自立庭禱雨, 廷臣恐傷聖體, 爭之而猶不已, 遂成暑疾, 幾殆而愈, 其爲民之誠可知.””

88) 俊啓이 ‘4卷’의 『國朝寶鑑』을 언급하고 바로 뒤이어 太宗, 世宗朝의 일을 말했음을 감안하면 世祖代 『國朝寶鑑』이 이 ‘4卷本’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4卷本’은 世祖代 편찬본 3冊에 새로 편찬한 『續國朝寶鑑』 1冊을 합본하여 간행한 4冊本이었던 것이다.

89) 『中宗實錄』 4권, 중종 2년 11월 29일 무진 3번째 기사.

90) 『中宗實錄』 4권, 중종 2년 11월 29일 무진 3번째 기사.
『中宗實錄』 4권, 중종 2년 12월 14일 계미 2번째 기사.

91) 正祖代 『國朝寶鑑』에 수록된 ‘國朝寶鑑總敍’에는 ‘지금 文苑의 故家에 간혹 世祖와 成宗 때의 일을 기록한 필사본 『續寶鑑』이 있는데, 徐居正이 지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義例는 『寶鑑』과 크게 다르고 문체가 마치

다음으로 正祖代 「國朝寶鑑」이 편찬되기 이전에 「國朝寶鑑」을 전거로 하여 世祖, 成宗대의 기사를 인용한 「顏樂堂集」(저자: 金訥, 1516년 간행)⁹²⁾과 「實錄」의 내용을 모아 失傳된 燕山君代 「續國朝寶鑑」 내용의 일부를 복원하였다.⁹³⁾ 이 과정에서 인용된 내용을 「實錄」에서 찾아 그 전거가 「實錄」인지 여부를 함께 확인하였다. 먼저 「顏樂堂集」에 수록된 「續國朝寶鑑」 내용과 「實錄」 전거 기사와의 대조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公侍講宣政. 講至唐玄宗改天寶年號, 群臣稱賀, 上曰: “當時賢相, 張九齡而已乎? 玄宗荒誕如此, 何無一人言之?” 公對曰: “賢相在位, 則所進皆賢, 小人爲相, 則所進皆小人. 當是時, 李林甫爲相, 小人道長, 賢者皆見幾而退, 誰有正言者?” 上曰: “然.” 出國朝寶鑑

⇒ 「成宗實錄」 79권, 성종 8년 4월 19일 丙辰 5번째 기사: 御夕講. 講綱目, 至「唐玄宗改天寶年號, 群臣稱賀」. 上曰: “當時賢臣, 張九齡而已乎? 玄宗之誕荒如此, 而何無一人言之? … 侍讀官金訥曰: “賢者爲相, 則所進皆賢人, 小人爲相, 則(取)〔所〕進皆小人也. 當是時, 林甫爲相, 小人道長, 賢者皆見機而退, 誰有正言者?” 上曰: “然.”

② 他日. 又講唐穆宗紀, 至守澄專制國事, 勢傾中外. 上曰: “宦者之弊, 自古有之, 使之驕橫, 至於不可制何也?” 公進曰: “履霜堅冰至, 蓋不能謹之於始, 遂至不可制, 漢唐之衰亡以此, 願上深鑑焉.” 上曰: “狎之則必至於無禮, 若有所犯, 當據法抵罪, 不少貸也.” 出國朝寶鑑

⇒ 「成宗實錄」 86권, 성종 8년 11월 18일 辛巳 2번째 기사: 御夕講. 講綱目, 至穆宗紀 ‘自有疾, 守澄專制國事, 勢傾中外’, … 上曰: “宦者之弊, 自古有之, …” 上曰: “宦者之驕橫, 至於不可制何也? 侍讀官金訥曰: “履霜堅冰, 可不能謹之於始, 遂至於不可制也. 漢唐之衰亡, 以此耳. 今中

稗官小說과 같으며, 또 「筆苑雜記」를 많이 인용하였는데 「筆苑雜記」는 바로 徐居正이 지은 것이니, 필시 자기가 쓴 글을 인용할 리가 없다. 더구나 徐居正은 成宗 때에 졸하였으니 「成宗寶鑑」을 미리 찬술하였을 리도 없다. 그것이 僞作이라는 것을 단연코 알 수 있겠다.[「今文苑故家, 或有寫本續寶鑑, 紀世祖成宗時事, 稱徐居正撰. 然義例大異於寶鑑, 如稗官小說之體, 且多引筆苑雜記, 而筆苑雜記即居正之所撰, 必無自引己書之理, 況居正卒於成宗之世, 亦不當預撰成宗寶鑑, 其爲贗作斷可知矣.」]라는 언급이 있고 같은 책 권18-중종2년-7, 권18-중종4년-7의 기사에는 中宗代에 成宗朝의 기사를 「國朝寶鑑」에서 인용한 내용이 보인다. 이는 앞의 ‘총서’에서는 「成宗寶鑑」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뒤의 수록 기사에서는 「成宗寶鑑」을 中宗이 보았다는 기사를 수록함으로써 그 존재에 대한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첫째 正祖代의 편찬 사업 시에 「續國朝寶鑑」이 찬집된 사실을 기록한 「燕山君日記」의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과 둘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廢朝인 燕山君代에 편찬된 「續國朝寶鑑」의 존재를 부정하고자 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총서’에서 짧지 않은 문장으로 成宗代의 사실을 기록한 이른바 ‘續寶鑑’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어조를 감안하면 燕山君代에 「寶鑑」을 편찬한 사실과 그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정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實錄」, 「承政院日記」 등 正祖代 「寶鑑」 편찬의 논의와 관련된 기록 중 이를 언급한 사례가 없으므로 어느 한 결론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본 연구를 위한 현존본 조사 시에 ‘續寶鑑’ 또는 ‘續國朝寶鑑’의 서명이 있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92)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 수록된 「顏樂堂集」을 참조하였다. 이 「顏樂堂集」의 底本은 서강대학교 도서관 소장 ‘고서 인61’(권1-권2 第36張),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222호’(권2 第37張-권2 나머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貫632-古3648-文10-2’(권3, 4 및 跋)이다. 아래의 내용은 모두 「顏樂堂集」 권4 「遺行」에 실린 것이다.

93) 제시한 기록들에서 인용된 서명은 모두 「國朝寶鑑」이며, 文宗 이상 왕대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 世祖代 「國朝寶鑑」의 기사로 판단하여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朝罷任宦官使主兵柄，聞有一宦人出使南京，擅殺官人還奏，帝不罪，以此觀之，中朝宦人之驕恣可知也。上曰：“狎之則必至無禮。顧予未知稼穡之事，唯此輩生長田里，熟知其苦，故時呼問之耳。若有所犯，固當據抵罪，不少貸也。”

- ③ 成廟一日，御便殿，召經筵官承旨，論歷代治亂之跡，公極論東漢黨錮之禍曰：“君子小人，各以類爲黨，辨之最難，此人主所當深慎處。”上曰：“然。辨之不明，則君子謬被其禍。”出入論確，夜深而罷。出國朝寶鑑

⇒ 『成宗實錄』 114권, 성종 11년 2월 11일辛酉 4번째 기사 : 夕, 上御宣政殿, 引見承旨經筵官, 教曰: “自威烈王至五代, 治亂興亡成敗之迹, 其相講論焉.” … 論至東漢黨錮之禍, 侍讀官金訢曰: “君子小人, 各以其類爲黨, 上曰: “辨之不明, 則君子謬蒙其禍.” … 講罷, 夜已二鼓矣.

- ④ 先胡簡公(金友臣)寶畜外王父成觀察(諱概)公所書魏徵十思疏軸。一日, 以軸受公, 仍戒曰: 爾遭遇聖明, 職在論思, 日進讜論, 師此魏公, 以無負繕寫貽後之意, 公祗受三復, 并箭上之, 規陳切至, 成廟惕然嘉之。

御札答曰: “省所上箭與魏徵疏軸, 深用嘉焉, 徵之此言, 實萬世之著龜也。爾父勸汝以魏相自許, 爾又勸予以唐虞同治, 可謂父愛其子, 臣愛其君者也。予雖不淑, 其敢忘之? 嘉爾之誠, 賞以褒之, 常置左右以自警焉。” 賜衣靴。未幾, 陞工曹參議。

⇒ 『成宗實錄』 193권, 성종 17년 7월 12일 乙卯 1번째 기사

弘文館直提學金訢進成概所書魏徵十漸疏簇, 仍上箭曰 臣父友臣召臣謂曰 “吾少鞠于外王父成概家, 概以善書名于一時, … 吾所蓄魏鄭公上太宗疏一軸, 乃其手蹟也, 吾寶而藏之久矣, 汝以不才遭遇聖明, 獲侍經幄, 職在論思, 汝所當師者, 莫鄭公若也, 今以付汝, 汝當惕然思齊, 動必循蹈, 嘉言讜論, 朝陳暮獻, 然後庶無負於吾外王父繕寫之意矣.” 臣祗受以退, 三復者有日, … 其魏徵疏一軸, 謹隨箭上進, 御書以答曰: “省所上箭與魏徵疏一軸, 深用嘉焉, 徵之此言, 實萬世之著龜也。爾父勸汝以魏徵自許, 爾又勸予以唐虞同治, 可謂父愛其子, 臣受〔愛〕其君者也。予雖不淑, 其敢忘之? 嘉爾之誠, 賞以褒之, 常置左右以自警焉。書之楷正, 固無所取。” 賜白紗帖裏及黑斜皮靴。

⇒ 『成宗實錄』 193권, 성종 17년 7월 28일 신미 3번째 기사

以柳洵爲 嘉善刑曹參判, 金訢通政工曹參議, 洪貴達嘉靖慶州府尹, 趙祉通政晉州牧使, 李壽生通政濟州牧使。

다음은 「實錄」에서 「續國朝寶鑑」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인용한 것과 「實錄」의 전거 기사의 대조 결과이다. 「實錄」의 경우 왕 또는 신하가 구두로 말한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 「續國朝寶鑑」의 내용을 글자대로 인용하지 않아 탐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부 인용 기사의 경우에는 정확히 대응되는 전거를 찾을 수 없었다.

- ① 「中宗實錄」 3권, 중종 2년 5월 11일 계축 2번째 기사
傳于左議政朴元宗, 右議政柳順汀曰: “予閱國朝寶鑑, 見成宗傳教, 臺諫乃予之耳目, 而多封奏, 以補予不逮, 其各加一資.”
- ⇒ 「成宗實錄」 10권, 성종 2년 6월 18일 己未 3번째 기사
傳旨吏曹曰: “臺諫爲予耳目, 卽位以來, 累上封事, 極陳時弊, 輔予不逮, 此非碌碌保身之輩所爲, 予甚嘉悅, 大司憲韓致亨, … 特加一資, 以旌之.”
- ② 「中宗實錄」 10권, 중종 4년 11월 7일 을축 1번째 기사
說經黃汝獻曰: “… 臣觀國朝寶鑑, 成宗朝不停經筵, 其好學之意可見, 至夜對, 非徒經筵官入侍, 無時特命府院君, 入侍講論, 或至夜分乃罷.”
- ⇒ 「成宗實錄」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癸未 5번째 기사
同知經筵事徐居正, 於經筵啓曰: “聖上日三御經筵, 繼以夜對, 聖學可謂至矣, … ”
- ③ 「中宗實錄」 14권, 중종 6년 6월 23일 신축 1번째 기사
弘文館啓曰: “… 因以國朝寶鑑, 太宗, 世宗朝, 每日視事, 及成宗朝, 盛暑御講等事, 付標以進.”
- ⇒ 「成宗實錄」 13권, 성종 2년 11월 21일 己未 4번째 기사
司憲府大司憲金之慶等, 司諫院大司諫成俊等上疏曰: “… 殿下臨御以來, 雖隆寒, 盛暑, 不廢經筵”
- ④ 「中宗實錄」 33권, 중종 13년 6월 6일 갑술 2번째 기사
上曰: “予見國朝寶鑑, 則有廢妃尹氏交通外間之事, 成宗卽言于政院而止抑之.”
- ⇒ 「成宗實錄」 105권, 성종 10년 6월 7일 壬辰 1번째 기사
昌孫啓曰: “臣夙夜反覆思之, 尹氏在宮禁時, 不善如此, 若交通外人, 出入無妨, 則其於後患何, 爲國家累, 豈不大哉? 願置別處, 高其垣墉, 使外人不得以出入.”
- ⇒ 上同. 2번째 기사
傳于承政院曰: “禁閉尹氏, 使不得見其兄弟, 只與母同居, 節目磨鍊以啓.”
- ⑤ 「中宗實錄」 40권, 중종 15년 윤8월 17일 임인 2번째 기사
侍讀官黃孝獻曰: “… 臣常觀國朝寶鑑, 君臣之間, 情意相孚, 無異於家人, 父子之間, 而近日則君臣之間, 儼威過, 而和厚之氣蓋未見焉, 成宗朝, 亦嘗與群臣戲言, 而有一翰林, 不言而出, 至招而使之言.”
- ⇒ (해당 하는 기사는 「實錄」에 보이지 않음)
- ⑥ 「中宗實錄」 66권, 중종 24년 10월 16일 무인 5번째 기사
李宗翼上疏, 略曰: “… 臣考之國朝寶鑑, 世祖九年, 宗直與李坡, 與十五學士之選.”
- ⇒ (世祖 9년에 金宗直이 學士에 選발된 「實錄」의 기사는 보이지 않음)
- ⑦ 「中宗實錄」 79권, 중종 30년 3월 4일 갑자 1번째 기사
上曰: “見成宗朝國朝寶鑑, 與侍從之臣, 講論諸書, 夜分乃罷”

⇒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여 정확히 해당하는 기사는 「實錄」에 보이지 않음)

⑧ 「明宗實錄」 5권, 명종 2년 3월 9일 경신 1번째 기사

參贊官周世鵬曰: “... 昔在成廟朝, 將質胡馬, 侍從俞好仁啓曰: ‘犬馬非其土性, 不畜于國. 本國非無良馬也, 不必市諸他國.’ 成廟教曰: ‘漢文帝時, 獻千里馬, 文帝猶却而不受. 況自求市於異國乎?’ 此言, 載在國朝寶鑑.”

⇒ 「成宗實錄」 275권, 성종 24년 3월 16일辛巳 2번째 기사

侍讀官俞好仁啓曰: “今命永安道點馬, 市御乘馬于斡朶里, 我國諸道牧場多良馬, 而濟州尤最, 良馬不爲乏也. 彼雖來獻, 猶多却之, 況市之乎? 古人有問國君之富, 數馬以對, 今求馬徒示弱耳.” 上曰: “漢文帝却千里馬, 予何獨市駿於彼人乎? 爾言誠是.”

⑨ 「明宗實錄」 7권, 명종 3년 3월 14일 기축 3번째 기사

檢討官朴民獻曰: “臣嘗見國朝寶鑑, 成宗即位元年, 春秋尙少, 猶且勤苦於學, 貞熹王后曰: ‘不奈勞苦聖體乎?’ 成宗對曰: ‘心誠樂之, 何有勞焉?’”

⇒ 「成宗實錄」 9권, 성종 2년 2월 29일 壬申 3번째 기사

大王大妃見上讀書不輟, 謂上曰: “得無勞乎?” 上對曰: “心自篤好, 不知爲勞.”

⑩ 「明宗實錄」 13권, 명종 7년 1월 12일 을미 3번째 기사

檢討官王希傑曰: “臣嘗見國朝寶鑑, 成宗朝掌苑署進暎山紅, 命却之.”

⇒ 「成宗實錄」 13권, 성종 2년 11월 21일 기미 2번째 기사

掌苑署進暎山紅一盆, 傳曰: “冬月開花, 出於人爲, 予不好花, 今後勿進.”

⑪ 「明宗實錄」 13권, 명종 7년 9월 18일 정유 1번째 기사

持平朴民獻曰: “臣嘗觀國朝寶鑑, 成宗雖有行幸之日, 還宮即御夕講, 此急於學問之盛心也.”

⇒ (대응되는 기사는 「實錄」에 보이지 않음)

⑫ 「明宗實錄」 32권, 명종 21년 4월 13일 甲戌 5번째 기사

成均館生員金德鵬等上疏曰: “... 臣等謹按國朝寶鑑, 惟我太宗命禁薦福之席, 世祖末年, 亦悔悟於僧國之言.”

⇒ (대응되는 기사는 「實錄」에 보이지 않음)

⑬ 「宣祖實錄」 60권, 선조 28년 2월 6일 기유 1번째 기사

鄭淑夏曰: “... 臣見國朝寶鑑, 成廟朝, 有前直長李惟義者, 利川人也, 精通易學, 驛召入參講席.”

⇒ (‘李惟義’라는 이름은 「成宗實錄」에 보이지 않음)

「續國朝寶鑑」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과 인용 내용의 「實錄」 전거를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續國朝實錄」 내용 수록 문헌과 인용 내용의 「實錄」 典據

연번	「續國朝實錄」 내용 수록 문헌	인용 시기	「實錄」 典據	주제
1	『明宗實錄』 7권, 명종 3년 3월 14일 기축 3번째 기사	成宗 卽位元年	『成宗實錄』 9권, 성종 2년 2월 29일 壬申 3번째 기사	勤學
2	『中宗實錄』 3권, 중종 2년 5월 11일 계축 2번째 기사	成宗	『成宗實錄』 10권, 성종 2년 6월 18일 己未 3번째 기사	臺諫, 포상
3	『明宗實錄』 13권, 명종 7년 1월 12일 을미 3번째 기사	成宗朝	『成宗實錄』 13권, 성종 2년 11월 21일 기미 2번째 기사	儉約
4	『中宗實錄』 14권, 중종 6년 6월 23일 신축 1번째 기사	成宗朝	『成宗實錄』 13권, 성종 2년 11월 21일 己未 4번째 기사	經筵
5	『中宗實錄』 10권, 중종 4년 11월 7일 을축 1번째 기사	成宗朝	『成宗實錄』 17권, 성종 3년 4월 17일 癸未 5번째 기사	經筵
6	『顏樂堂集』 권4	成廟	『成宗實錄』 79권, 성종 8년 4월 19일 丙辰 5번째 기사	經筵 (인재 등용)
7	『顏樂堂集』 권4	成廟	『成宗實錄』 86권, 성종 8년 11월 18일 辛巳 2번째 기사	經筵 (宦官 경계)
8	『中宗實錄』 33권, 중종 13년 6월 6일 갑술 2번째 기사	成宗	『成宗實錄』 105권, 성종 10년 6월 7일 壬辰 1번째 기사, 2번째 기사	외척 (廢妃 尹氏)
9	『顏樂堂集』 권4	成廟	『成宗實錄』 114권, 성종 11년 2월 11일 辛酉 4번째 기사	經筵(君道)
10	『顏樂堂集』 권4	成廟	① 『成宗實錄』 193권, 성종 17년 7월 12일 乙卯 1번째 기사 ② 『成宗實錄』 193권, 성종 17년 7월 28일 신미 3번째 기사	求諫, 포상
11	『明宗實錄』 5권, 명종 2년 3월 9일 경신 1번째 기사	成廟朝	『成宗實錄』 275권, 성종 24년 3월 16일 辛巳 2번째 기사	經筵(財政)
12	『中宗實錄』 40권, 중종 15년 윤8월 17일 임인 2번째 기사	成宗朝	(없음)	君臣 관계
13	『中宗實錄』 66권, 중종 24년 10월 16일 무인 5번째 기사	世祖 9年	(없음)	신하(金宗直)
14	『中宗實錄』 79권, 중종 30년 3월 4일 갑자 1번째 기사	成宗朝	(없음)	經筵
15	『明宗實錄』 13권, 명종 7년 9월 18일 정유 1번째 기사	成宗	(없음)	經筵(勤學)
16	『明宗實錄』 32권, 명종 21년 4월 13일 甲戌 5번째 기사	世祖末年	(없음)	異端(佛敎)
17	『宣祖實錄』 60권, 선조 28년 2월 6일 기유 1번째 기사	成廟朝	(없음)	인재 등용

<표 4>를 살펴보면 총 17건의 「續國朝實錄」 인용 기사가 보인다. 기록별로는 「顏樂堂集」에서 4건, 「中宗實錄」에서 7건, 「明宗實錄」에서 5건, 「宣祖實錄」에서 1건이 인용되었다.⁹⁴⁾ 이 중 6건은

94) 世祖, 睿宗, 成宗의 기사를 수록한 「續國朝實錄」의 인용이 中宗 11년(1516)에 간행된 「顏樂堂集」과 「中宗實錄」, 「明宗實錄」에서 보이고 그 이후 「宣祖實錄」 1건 외에는 자취를 감춘다는 점을 통해 「續國朝實錄」이 倭와의

대응되는 「實錄」의 기사가 보이지 않는데, 인용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되는 「續國朝寶鑑」의 기록이 「實錄」 외의 사료에서 전거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다.

시기별로는 世祖 9년, 世祖 末年의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15건이 모두 成宗代의 기사로 成宗 2년이 4건, 成宗 3년이 1건, 成宗 8년이 2건, 成宗 10년이 1건, 成宗 11년이 1건, 成宗 17년이 1건, 成宗 24년이 1건, 연대 미상이 4건이다.

주제별로는 經筵과 관련한 기사가 총 8건으로 가장 많은데 세부 주제로는 인재 등용, 宦官, 君道, 財政 등 다양하며 이는 經筵에서 학문적 내용 외에도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는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든지 諫言과 臺諫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든지 廢妃 尹氏 사건을 들어 외척의 정치 참여를 경계하는 내용 등을 인용하였다.

5. 結 論

본 연구는 「國朝寶鑑」의 문헌 계통 및 체제와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고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의 실제 간행 여부를 밝히고 失傳된 내용 일부를 복원한 것이다. 연구의 결과를 간추려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 記言體 史書의 종류와 특성을 살피고 「國朝寶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尙書」를 시원으로 하는 記言體 史書는 唐 吳兢의 「貞觀政要」의 편찬에 이르러 編年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史書로서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貞觀政要」를 체제적 典範으로 삼아 宋代에 대부분 軍왕의 「寶訓」이 편찬되었으며 明代에 들어와 「大明日曆」과 「皇明寶訓」의 편찬을 계기로 先王의 「實錄」과 「寶訓」을 연이어 편찬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國朝寶鑑」은 中國 記言體 史書의 제도적·사상적 측면을 수용하여 편찬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체제와 내용에서는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둘째, 체제와 내용적 특징에 있어 각 「寶鑑」이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체제면에서 권수 부분의 경우 箋文, 序文, 凡例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改行과 空格을 적용하여 軍왕에 대한 존경의 뜻을 나타내었다. 正祖代 「國朝寶鑑」의 경우 改行 대신 空格만을 적용하여 읽는 이의 편의성을 높였다. 본문의 구성은 世祖代 「國朝寶鑑」, 正祖代 「國朝寶鑑」과 같이 여러 왕대를 함께 수록한 것과 「宣廟寶鑑」, 「肅廟寶鑑」과 같이 하나의 왕대만을 수록한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 某朝一과 같은 편명이 각 권의 첫머리에 나오지만 후자의 경우 편명 없이 바로 재위년을 쓴 것이 차이점이다. 본문의 표현 형식은 앞 3개의 「寶鑑」의 경우 改行을 통해 존경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중시한 나머지 열람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正祖代 「國朝寶鑑」은 이를 개선하여 이전에 간행된 「寶鑑」에 비하여 검색과 열람의 편의성에서 훨씬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寶鑑」의 구성과 표현

전쟁 과정에서 산실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형식은 대체로 「實錄」의 체제와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는 李端夏 개인이 주도하여 편찬된 「宣廟寶鑑」을 제외한다면 모든 「寶鑑」에 공통적으로 국가의 기본적 책무 및 군왕의 수신과 관련된 기사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를 제외하면 각 「寶鑑」은 편찬된 시대에 따라 내용상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다. 世祖代 「國朝寶鑑」에서는 각 군왕별 내용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고 개국의 정당성과 관련된 기사가 자주 보인다. 「宣廟寶鑑」에서는 李珣, 成渾과 같은 西人 신하에 대한 내용과 記事體 형식으로 서술된 壬辰倭亂 관련 내용이 증점적으로 서술되었다. 「肅廟寶鑑」에서는 군왕 肅宗의 말이 풍부하게 수록되었으며 국가 정책과 관련된 절목과 예법에 대한 부분이 상세히 실렸다. 「英宗朝寶鑑」에서는 앞선 「寶鑑」의 사례를 절충하여 「肅廟寶鑑」의 군왕 중심의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보다 압축적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개별 사건의 서술은 世祖代 「國朝寶鑑」과 같이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宣廟寶鑑」과 같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記事體로 서술하였다. 「肅廟寶鑑」의 상세한 절목을 수록하는 방식 역시 계승하였다. 주제적으로는 예법, 즉위 초의 반란의 진압과 처벌, 箕子·三國·高麗 등 우리 역사의 중시, 英祖의 검약한 성품, 「小學」의 중시, 王世孫(正祖)과 관련된 기사가 다수 수록되었다.

한편 각 「寶鑑」 수록기사의 전거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 「實錄」에서 해당 내용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世祖代 「國朝寶鑑」은 표시한 재위년과 다른 연도의 「實錄」 기사를 수록하거나 일부 내용을 변경한 것이 있어 그 서술에 일정한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宣廟寶鑑」과 「肅廟寶鑑」은 「實錄」에서 모든 기사의 내용을 가져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英宗朝寶鑑」은 타 「寶鑑」에 비하여 「實錄」에서 전거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기록에 근거하여 「承政院日記」, 「備局謄錄」 등의 1차 사료가 보조 전거로서 활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셋째, 燕山君代 「續國朝寶鑑」의 실제 간행 여부를 파악하고 「顏樂堂集」과 「實錄」에 수록된 逸文을 모아 失傳된 내용 일부를 복원하였으며 대응되는 「實錄」의 전거 기사를 찾아 비교하였다. 그 결과 「續國朝寶鑑」의 간행본이 壬辰倭亂 이전에 존재했음을 밝혔으며 총 17건의 「續國朝寶鑑」 인용 기사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중 11건은 「實錄」에서 전거 기사를 찾을 수 있었으며 6건은 「實錄」에 해당 인용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시기별로는 世祖代의 2건을 제외하면 모두 成宗代의 기사이다. 주제별로는 經筵 관련 기사가 총 8건으로 가장 많은데 세부 주제로는 인재 등용, 宦官, 君道, 財政 등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전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國朝寶鑑」의 문헌 계통을 밝히고 일부 「寶鑑」에 국한되어 있던 연구 범위를 世祖代 「國朝寶鑑」, 「宣廟寶鑑」, 「肅廟寶鑑」, 正祖代 「國朝寶鑑」으로 넓혀 체제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간략하게만 언급되었던 「續國朝寶鑑」의 간행과 내용을 살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朝鮮과 中國의 군주서 문헌의 연구 및 각 「寶鑑」이 편찬된 당대 역사 연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國朝寶鑑」의 전체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 朝鮮의 다른 군주서와의 비교 고찰을 하지 못한 점 등이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國朝寶鑑」(世祖代 편찬본: 甲寅字本), 규장각 소장본(奎貴1213, 영인)
「宣廟寶鑑」(戊申字本), 규장각 소장본(奎1166, 영인)
「肅廟寶鑑」,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한古朝54-11, 영인)
「國朝寶鑑」(正祖代 편찬본), 장서각 소장본(K2-15, 영인)
臺灣商務印書館 編. 「(影印)文淵閣四庫全書」. 臺灣: 臺灣商務印書館, 1983.
「經幄管見」
「古今原流至論」
「明史」‘藝文志’, ‘列傳: 詹同傳’
「宋史」‘藝文志’
「新唐書」‘藝文志’
「玉海」‘藝文’
「貞觀政要」
「漢書」‘藝文志’
四庫全書存目叢書編纂委員會 編. 「四庫全書存目叢書」. 濟南: 齊魯書社, 1993.
「文華大訓箴解」
「皇明寶訓」
「皇明祖訓」

2. 연구논저

[단행본]

- 국립고궁박물관 編. 「國朝寶鑑」.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2016.
민족문화추진회 譯. 「국역 국조보감」.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9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 「國朝寶鑑」.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6.
오향녕 譯. 「史通」. 서울: 역사비평사, 2014.
劉節 著·신태갑 譯. 「中國史學史 講義」. 서울: 신서원, 2000.
이운화 譯. 「史通通釋」. 서울: 소명출판, 2012.
정재훈. 「조선의 국왕과 의례」. 파주: 지식산업사, 2010.
정병섭 譯. 「(譯註)禮記集說大全:玉藻 附 正義·訓纂·集解」. 서울: 학고방, 2013.

[논문]

(國文)

김상호. “「國朝寶鑑」 1782年 板本の 刻手 研究.” 『書誌學研究』 44집(2009. 12). 193-209.

김상호. “「國朝寶鑑」 1848年 刊本の 刻手に 關한 研究.” 『書誌學研究』 45집(2010. 3). 97-117.

김정미. “正祖代 「國朝寶鑑」 刊印의 運用실태 연구.” 『書誌學研究』 44집(2009. 12). 349-384.

정재훈. “「國朝寶鑑」을 통해 본 朝鮮前期의 政治思想.” 『國史館論叢』 100집(2002). 37-60.

정형우. “國朝寶鑑의 編選經緯.” 『東方學誌』 33집(1982). 157-185.

조계영. “朝鮮王室 奉安 書冊의 粧績과 보존 연구: 「璿源系譜紀略」과 「國朝寶鑑」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06.

허태용. “正祖의 繼志述事 기념사업과 「國朝寶鑑」 편찬.” 『韓國思想史學』 43집(2013. 4). 185-213.

(中文)

孔學. “宋代「宝訓」纂修考”. 『史學史研究』 第3期(1994). 56-64.

楊永康. “洪武七年官修「皇明宝訓」史料价值初探”. 『史學史研究』 第3期(2008). 86-97.

倪道善. “「宝訓」, 「圣訓」考”. 『山西檔案』 第5期(2006). 13-15.

王德毅. “宋代的聖政和實訓之研究”. 『書目季刊』 20卷 第3期(1986). 13-24.

牛建强. “明初「大明日歷」与「皇明宝訓」的纂修”. 『史學史研究』 第1期(2000). 67-70.

李建國. “「群書考索」与宋代“宝訓””. 『古籍整理研究學刊』 第1期(2009. 1). 22-25.

許振興. “宋代「三朝宝訓」篇目考”. 『古籍整理研究學刊』 第4·5期(2000). 84-85.

許振興. “「古今源流至論」中的宋代「宝訓」佚文”. 『古籍整理研究學刊』 第4期(2000). 53-60.

3. 전자정보원

『동양고전종합DB』 <<http://db.cyberseodang.or.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Gye-young. 2006. *Study of the mounting and preservation of royal books in Joseon dynasty: focusing on Seonwon-gyebo-giryak(璿源系譜紀略) and Gukjo-bogam(國朝寶鑑)*.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 of Korean Studies.
- Huh, Tae-young. 2013. "King Jeongjo's Succession commemoration projects and Compilation of Gukjobogam." *The Society for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s*, 43: 185-213.
- Jeong, Byeong-seop (Trans.). 2013. *Book of Rites with Collected Commentaries*. Seoul: Hakgobang.
- Jeong, Hyeong-u. 1982. "Compilation process of Gukjobogam."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Dong Bang Hak Chi), 33: 157-185.
- Jeong, Jae-hun. 2002. "Political Though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rough Gukjobogam." *Treatises on Korean History*, 100: 37-60.
- Jeong, Jae-hun. 2010. *King and Ritual of Joseon*. Paju: Jisiksaneopsa.
- Kim, Joung-Mi. 2009. "The Study on the Management of the Publication of Gukjobogam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4: 349-384.
- Kim, Sang-Ho. 2009. "A Study on the Engravers of Gukjobogam Printed in 1782."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4: 193-209.
- Kim, Sang-Ho. 2010. "A Study on the Engravers of Gukjobogam Printed in 1848."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45: 97-117.
-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1976. *Gukjobogam*. Seoul: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 Korean Classics Research Institute (Trans.). 1996. *Gukyeok Gukjobogam*. Seoul: Korean Classics Research Institute.
- Lee, Yun-hwa (Trans.). 2012. *Satongtongseok*. Seoul: Somyong publishing.
- Liu Jie and Shin, Taegap (Trans.). 2000. *Lectures in History of Chinese historiography*. Seoul: Sinseowon.
-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2016. *Gukjobogam*. Seoul: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 Oh, Hang-Nyeong (Trans.). 2014. *Satong*. Seoul: Yeoksabipyongsas.